"시민체감, 수원대전환" 삶에
힘이되는 돌봄도시, 완성

시민용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나에게 힘이 되는

2025년
사회복지서비스 안내



수원특례시
복지정책과

목 차

♡ 든든한 복지안전망(기초생활보장사업 등) ····· 7

♥ 취약계층 자립기반 조성 및 일상돌봄서비스 ····· 15

♥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 21

♥ 지역복지 증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23

♡ 수원새빛돌봄사업 추진 ····· 25

♥ 어려움 극복, 위기가정 지원 ····· 29

♡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 35

♥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 39

♥ 어르신 치매검진 등 건강 지원 ····· 43

♥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 47

♡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49

♡ 여성 및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65

♡ 아이행복, 부모행복, 안심보육(돌봄)서비스 제공 ····· 69

♥ 수원에서 같이, 1인가구 함께(WITH) ····· 79

♡ 청소년 보호 및 사회안전망 구축 ····· 81

♡ 이주민과 상생하는 포용도시, 수원 ····· 85

♡ 보건소 모자보건 및 건강증진사업 추진 ····· 89

2025년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매뉴얼 세부내역

관 련 법 령	사 업 명	세부 지원내용	관련 시설	비고
총 39개 지침	**63개 사업**	**260개 서비스**	**총 350개 (경로당 등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의료·주거·교육급여사업안내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안내	**1.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생계, 의료**(요양비, 임신출산진료비, 장애인보조기기,노인개안수술,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무릎관절수술,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재가의료급여사업), **주거, 교육**(교육활동지원비 등), **해산, 장제급여, 정부양곡지원사업 등 19개 감면서비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요양급여 비용 본인부담 경감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만성질환자(입원외래, 65세이상 틀니·치과임플란트, 추나요법) /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취약 계층**
자활사업안내 자산형성지원(통장사업 안내)	**2.자활사업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자활근로사업 **-구 통장** (희망키움통장1,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신 통장**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 계좌 (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 일상돌봄 (재가돌봄 가사,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맞춤재활, 세탁, 독립생활지원, 신체 건강증진)	지역자활센터 3 노숙인자활시설 1 노숙인관련시설 3	
	3.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등 지원사업	**-시비사업** 보훈명예수당, 사망 위로금, 보훈가족 위문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문,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도비사업** 생활보조보훈수당, 참전명예수당,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보훈수당	보훈회관 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4.사회복지관 운영 및 푸드뱅크사업**	-사회복지관(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푸드뱅크사업(결식아동, 독고노인 등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받아 물적나눔 지원)	사회복지관 5 푸드뱅크 5	
	5.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	신체활동, 가사활동, 병원동행, 일상생활 업무동행, 소모품교체(부분수리), 대청소, 소독방역, 일반식 제공, 죽식 제공, 단기보호, 반려동물 일시보호, 맞춤형 운동재활, 성인상담, 아동·청소년상담, 중독관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37 (별도)	
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안내	**6.긴급복지 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긴급복지 지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복지시설이용**,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구직활동비, 긴급통합지원**	휴먼서비스센터 1	

관 련 법 령	사 업 명	세부 지원내용	관련 시설	비고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권)	**7.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설, 주야간, 방문요양, 목욕, 복지용구	장기요양시설 480	**노인**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1권)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안내	**8.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생활지원, 주거개선, 건강지원,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미 투약지원 등	서비스 수행기관 10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1권)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사업안내	**9.독거노인응급 안전알림서비스**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 설치	서비스 수행기관 1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권)	**10.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 운영**	가사·일상생활지원, 신변·활동지원, 안부·안전확인, 사례관리, 상담, 후원·결연 등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센터 6	
기초연금사업안내	**11.기초연금사업**	기초연금		
수원시 효사랑지원금, 효도수당 지원	**12.효도수당 및 효사랑 지원사업**	효도수당, 효사랑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1권)	**1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 및 수행기관	일자리수행기관 14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1권)	**14.경로당 및 대한 노인회지회 운영**	-경로당(민요, 요가, 노래교실 등 여가활동 지원), -노인회지회(노인대학 및 그라운드 골프대회 등)	경로당 533 노인회지회 4개구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1권)	**15.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복지관(여가, 건강, 일자리, 자원봉사, 사회참여, 경로식당,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노인복지관 6 경로식당 10	
치매정책사업 안내	**16.치매 등 건강지원 사업**	치매검진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발급 및 지문등록,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치매예방관리(치매예방교육,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치매 환자 가족 및 보호자 지원프로그램 (치매환자 쉼터,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치매안심센터 4	보건소
의료급여사업 안내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1권)	**17.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사업**	어르신 개안수술, 틀니, 치과 인플란트, 무릎인공관절수술, 국가예방접종지원		보건소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1권)	**18.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교통비, 문화활동비, 국민건강보험료, 이동통신 통신요금		
장애인복지사업안내	**19.장애인등록 신청절차 등**	장애인등록 신청절차(등록장애인 복지서비스 별도)		**장애인**
장애인연금사업안내	**20.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사업안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21.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22.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활동보조, 방문목욕 ·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 제공기관 11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사업안내	**23.중증장애인응급 안전알림서비스**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 설치	서비스 수행기관 1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4.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취미여가, 직업탐구, 자립준비활동, 관람 및 자조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5.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자조모임, 산책걷기 등 건강증진 활동, 직장탐방, 교육, 음악, 미술활동, 창작품 만들기, 목공예 등	서비스 제공기관 1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6.언어발달지원서비스**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 · 청능·재활 등 언어발달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 제공기관 51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7.발달재활서비스**	언어 · 청능 · 미술 · 음악 · 행동 · 놀이 · 심리 · 감각 · 운동 등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8.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심리 · 정서적 상담 지원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9.장애인아 가족양육지원**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으로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 시 돌보미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장애인복지사업안내	**30.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보조기기 지원 및 수리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업체 9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31.장애인 일자리지원**	장애인 일자리지원 및 수행기관	일자리수행기관 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32.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복지관(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서비스, 장애인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관 2	
	33. 새빛이음(수원특례시 발달장애종합정보시스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영역별 ·발달지연, 복지서비스, 자녀평생설계, 시설 및 기관 등		

관 련 법 령	사 업 명	세부 지원내용	관련 시설	비고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34.한부모(조손)가족 자립지원사업**	-한부모(조손) 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 추가, 학용품비,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고교교육비,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입학금, 대학입학준비금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급지원, 자립지원촉진수당	한부모 관련시설 2	**여성 등**
아동분야사업안내 아동수당사업안내	**35.출산장려 및 입양 문화정착지원사업**	첫만남 이용권, 출산지원금, 아동수당, 입양지원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둘째자녀이상 한약할인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36.가족여성회관 운영	가족여성회관(가족의 가치 재발견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가족여성회관 1	
	37.여성문화공간-휴 운영	여성문화공간-휴(여성의 건강, 문화, 교육, 공동체 활동, 심신상당 등)	여성문화공간-휴 1	
보육사업안내	**38.부모급여(영아수당)**	부모급여(영아수당), 부모보육료(종일제 아이돌봄)		**보육 등**
보육사업안내	**39.가정양육수당(장애아 양육수당 포함)**	가정양육수당(장애아 양육수당 포함)		
보육사업안내	**40.영유아보육료 및 보육경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0~5세-다문화 포함, 장애아, 야간, 방과후, 누리차액, 유아학비 시간연장, 기관보육료) -보육경비(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아동분야사업안내	**41.가정위탁아동 선정 및 지원사업**	양육보조금, 아동용품구입비, 특별위로비, 학습재료비, 교육보호비, 체험학습비, 대학준비금, 특별학습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42.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영아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가족사업안내(1권)	**43.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맞춤형 가족서비스 제공)	건강가정지원센터 1	
다함께돌봄사업안내	**44.다함께돌봄센터 및 학교돌봄터사업 운영**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교돌봄터사업 운영(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간식 제공, 방과 후 상시 및 일시 돌봄, 숙제지도 및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제공)	다함께돌봄센터 20 학교돌봄터 1	
	45.드림스타트센터 운영	건강·보육(교육)·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상담, 사례회의, 건강검진, 영양교육, 아동권리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건강프로그램, 구강교육, 심리감사, 정신건강 서비스, 의료지원, 기초학습지원, 영유아 인지발달, 부모교육 등	드림스타트 3	
결식아동급식(지방이양)	**46.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급식전자카드, 학교급식소		
	47. 1인가구 지원	-수원시 1인가구 온라인 플랫폼 "쏘옥"(1인가구 맞춤형 정보 및 소통공간 제공) -1인가구 "쏘옥" 패밀리 운영 (정책발굴, 모니터링, 분과활동 등) -4구4색 1인가구 거점지원사업 (쿠킹클래스, 여가활동, 노년층 디지털 교육, 핸드드립 실습 및 심리상담) -1인가구 지원사업 (생활꿀팁 바구니, 식생활 개선 다이닝, 건강돌봄 프로그램, 금융안전교육)		
청소년사업안내(1권)	**48.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 사용범위		**청소년**
청소년사업안내(1권)	**49.위기청소년 복지 체계 강화**	시군 청소년 안전망사업,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고립·은둔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서비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사업안내(2권)	**50.청소년시설 운영**	청청마음건강센터, 이주배경 청소년 전문 상담실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청소년 쉼터 운영	청소년관련시설 24	

관 련 법 령	사 업 명	세부 지원내용	관련 시설	비고
가족사업안내(1권, 2권)	**51.거주이주민 사설 운영**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생활상담, 맞춤형서비스 지원, 한국어 교육, 다문화 예비학교, 방과 후 학습지원, 동아리활동, 지역사회 연계 문화체험, 지역조직화사업, 자원관리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사업 및 상담, 성평등 및 인권, 취약 위기가족 통합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가족 캠프지원 등) -외국인복지센터 (재수원교민회, 통역지원사업, 외국인 주민지원사업, 다문화 한가족축제 등)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외국인복지센터 1	**다문화**
가족사업안내(1권, 2권)	**52.다문화가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다문화가족자녀 방문학습자 지원, 다문화가족 신문구독 지원,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지원		
경기도 외국인 주민 긴급생계비 지원	**53.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지원**	외국인 긴급지원, 외국인 생활안전교육, 외국인생활안내서,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말하기대회, 다문화 한가족 축제		
의료급여사업 안내	**54.보건소 건강증진**	진료, 생애전환주기별 건강관리, 아동 담당의 의료지원, 영양플러스사업		**보건소**
모자보건사업안내	**55.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혼인전 임신전 건강검진, 엽산제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냉동난자보조 생식술 지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산전관리 임산부 등록관리, 임신 초기·말기 검사 -산후관리 유축기대여, 맘편한 임신통합 제공서비스 -모성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후 조리비 지원, 임산부 우울 선별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지원 -영유아 지원사업 신생아 난청 보청기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접종 및 검사지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안내	**56.보건소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성인 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 가입자) 의료비 지원,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안내	**57.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취약계층 방문보건, 어르신 방문보건관리		

관 련 법 령	사 업 명	세부 지원내용	관련 시설	비고
정신건강사업 안내	**58.보건소 정신건강사업 (수원시 행복정신건강 복지센터)**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 마로앱 운영, 기관종사자 찾아가는 마음산책,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홍보, 마음건강관리사업(마음건강 상담실, 톡톡열린상담실) 등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1	
정신건강사업 안내	**59.보건소 정신건강사업 (수원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맞춤형 질환관리 및 상담, 사례관리, 가족코칭 및 가족성장 지원, 마음건강 학교만들기사업 등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복지센터 1	
정신건강사업 안내	**60.보건소 정신건강사업 (수원시 성인정신건강 복지센터)**	만성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시민 정신건강 강좌 개최 등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1	
정신건강사업 안내	**61.보건소 정신건강사업 (수원시 노인정신건강 복지센터)**	노인 정신질환 상담 및 등록 관리, 맞춤형 통합프로그램, 조기발견을 위한 노인정신건강 종합검진, 자살예방사업 등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1	
자살예방사업 안내	**62.자살예방 및 중독관리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담사업, 자살예방교육, 24시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유가족 지원, 생명사랑 안심마을사업 등	자살예방센터 1	
정신건강사업 안내	**63.자살예방 및 중독관리 (수원시 중독관리 통합 지원센터)**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개입, 알코올 및 기타 중독 예방 및 관리, 가족 지원, 중독폐해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자원 개발 등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1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64.참고자료(사회복지 시설 현황)**	**사회복지 관련 시설 총 350개소** (경로당, 요양시설, 민간어린이집 제외) -사회복지 일반 13 -노숙인 4 -보훈 등 2 -여성 13 -한부모 2 –노인 33 -장애인 56 -정부어린이집 및 아동시설 194 -청소년 24 -다문화 3 -보건 관련 6	관련 업무 참고	

든든한 복지안전망(기초생활보장사업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table>
<tr><th>대상 및 지원기준</th><th>신청방법</th><th>문 의</th></tr>
<tr><td>

• **대 상**
- 근로능력 여부 ·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보장절차 : 처리기한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신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등 가능)
-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지출실태 확인서 등**
- **조사**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확정, 소득·재산신고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근로능력 판정 절차에 따라 근로능력 판정(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 확인)
- **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급여**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급여 제공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 **확인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확인조사 등 통해 **급여변경 및 급여중지 등 결정**
•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 초과 시 **급여중지(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 징수)**
• **선정기준**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25년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생계급여(중위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의료급여(중위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주거급여(중위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교육급여(중위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 **지원내용**

지원	지원내용	비 고
생계 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해당 금액과 가구 소득인정액과 차액 지급 예)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선정기준(765,444원)–가구 소득인정액(300,000원) = 465,444원	-보장시설 (시청 복지정책과) -각 구청 (일반수급자 등)
의료 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주거 급여	-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개보수 지원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
교육 급여	-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 고등학생 교과서대 :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금액 - 교육활동지원비 : 초 487,000원, 중 679,000원, 고 768,000원 지원(바우처)	교육청
해산 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각 구청 (사회복지과)
장제 급여	- 수급자 사망 시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80만원 지급(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td><td>

•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신분증 등) 및 초기상담
→
구청 (사회복지과) 소득 및 재산 조사 (보장결정 요청)
→
시청 (각 사업팀) 보장결정 및 통지

</td><td>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td></tr>
</table>

□ 의료급여사업

<table>
<tr><th>대상 및 지원기준</th><th>신청방법</th><th>문 의</th></tr>
<tr><td>• 대 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이재민, 의사상자,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등)
• 지원유형
- 1종 : 근로능력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18세 미만, 65세이상,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 타법 수급자(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3급 이상,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 관계자, 노숙인),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 2종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타법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경우
• 본인 부담금액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1차(의원)</th><th>2차(병원, 종합병원)</th><th>3차(상급 종합병원)</th><th>약국</th></tr>
<tr><td rowspan="2">1종</td><td>입원</td><td>없음</td><td>없음</td><td>없음</td><td>-</td></tr>
<tr><td>외래</td><td>1,000원</td><td>1,500원</td><td>2,000원</td><td>500원</td></tr>
<tr><td rowspan="2">2종</td><td>입원</td><td>10%</td><td>10%</td><td>10%</td><td>-</td></tr>
<tr><td>외래</td><td>1,000원</td><td>15%</td><td>15%</td><td>500원</td></tr>
</table>
</td><td>•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신분증 등)
및 초기상담
→
구청(사회
복지과)
소득 및
재산 조사
(보장결정 요청)
→
시청
(의료급여팀)
보장결정 및
통지
(의료급여팀)
- 사례관리 실시
(신규 수급자, 다빈도 외래 이용, 장기입원, 연중관리군 등)</td><td>•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td></tr>
<tr><td>• 의료급여 지원(범위)
- 요양비 :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비, 산소치료, 당뇨성 소모성재료, 당뇨병 관리기기,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기침유발기 대여, 양압기 대여 등
- 임신·출산 진료비
▶ 1, 2종 구분없이 태아당 100만원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는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사용 가능[진료비는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2년되는 날까지 사용]
- 장애인보조기기
▶ 급여대상 유형 :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교정용신발류, 그 밖의 보조기기(수동휠체어, 지팡이, 의안, 흰지팡이, 보청기, 전동휠체어, 욕창예방 매트리스, 보행차 등), 소모품
▶ 지원절차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 / 신청(시군구, 읍면동)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시군구) / 보조기기 구입(등록된 업소) / 보조기기 검수(처방전 발급할 수 있는 의사, 판매업자 등 대행불가) / 구입비용 지급청구(시군구) / 구입비용 지급(시군구) / 사후점검(급여지급 후 3개월, 1년 경과 시점)
- <u>기타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사업(노인틀니, 임플란트 등) “보건소 업무” 참조</u></td><td>•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신분증 등)
→
구청(사회
복지과)
결정 및 지원</td><td>•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td></tr>
</table>

□ 재가 의료급여사업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 의
• **대 상** **동일 상병으로 장기입원(31일 이상) 후 퇴원한 의료급여수급자** • **관리기간** - **퇴원 후 1년 이내** ※ 퇴원 후 1개월 이내 대상자 선정 필요 ※ **동에서 의료급여 장기입원자의 퇴원예정 관련 재가 서비스 상담 시 의료급여팀으로 빠른 의뢰 중요** • **협력병원** - 3개소(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화홍병원, 하나병원) • **수행인력** - **수원시 의료급여관리사(6명)** • **사업내용** - **재가 생활에 필요한 <u>의료 · 돌봄 · 식사 · 이동 등 서비스 제공</u>** · 의 료 : 협력병원의 케어플랜 수립 및 모니터링 등 · 비 의 료 : 돌봄, 식사, 병원이동 등 서비스 제공 · 선택급여 : 주거개선 및 냉·난방기구, 필수가전 등 지원 (연 200만원 이내) ※ 기존 지역사회 서비스를 우선 연계, 필요시 재가 의료급여로 보완	• 연중 • 시청 복지정책과 (의료급여팀, 의료급여관리사) 상담 및 대상자 선정 후 서비스 지원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시청 복지정책과 (의료급여팀)

□ 주거급여사업

<table>
<tr><th>대상 및 지원기준</th><th>신청방법</th><th>문 의</th></tr>
<tr>
<td>
• 대 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1,148,166원, 2인 1,887,676원, 3인 2,412,169원 등)
• 지원내용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개보수 지원
• 지원기준 (단위: 원)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1인</th><th>2인</th><th>3인</th><th>4인</th><th>5인</th><th>비고</th></tr>
<tr><td rowspan="2">주거급여 지원기준</td><td>임차급여 지급기준</td><td>281,000</td><td>314,000</td><td>375,000</td><td>433,000</td><td>448,000</td><td>2급지 (수원)</td></tr>
<tr><td>2급지 기준임대료의 60%</td><td>168,600</td><td>188,400</td><td>225,000</td><td>259,800</td><td>268,800</td><td></td></tr>
<tr><td rowspan="3">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적용기준</td><td>부양의무자 제공 전체</td><td>114,600</td><td>129,000</td><td>153,600</td><td>178,200</td><td>184,200</td><td></td></tr>
<tr><td>부양의무자 제공 부분 /제3자 제공 전체</td><td>89,388</td><td>100,620</td><td>119,808</td><td>138,996</td><td>143,676</td><td></td></tr>
<tr><td>제3자 제공 부분</td><td>22,920</td><td>25,800</td><td>30,720</td><td>35,640</td><td>36,840</td><td></td></tr>
</table>
</td>
<td>
•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신분증 등) 및 초기상담
→
구청(사회복지과) 소득 및 재산 조사 (보장결정 요청)
→
시청 (주거복지팀) 보장결정 및 통지 (주거복지팀)
- 급여지급 등
</td>
<td>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td>
</tr>
</table>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및 기타 복지서비스

○ 정부 양곡 지원사업

<table>
<tr><th>대상 및 지원기준</th><th>신청방법</th><th>문 의</th></tr>
<tr>
<td>
• 대 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정부양곡 구입 희망자
• 지원내용
급여종류별 정부양곡 판매가의 60% ~ 90%를 할인지원
• 지원기준 : 1인당 월 10kg 지원
• 공급가격 (단위: 원)
<table>
<tr><th colspan="3">구 분</th><th>개인 부담</th><th>택배비</th></tr>
<tr><td rowspan="2">신곡 ('24년산)</td><td rowspan="2">10kg (25,160원)</td><td>생계·의료급여수급자 (90%할인)</td><td>2,500</td><td rowspan="2">3,000 (1포당)</td></tr>
<tr><td>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0%할인)</td><td>10,000</td></tr>
</table>
※ 양곡대금 지원 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에서 지출
※ 택배용역 위탁계약은 농식품부와 희망나르미사회적협동조합 (전국 자활기업)이 계약 체결
</td>
<td>
• 연중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청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 양곡대금 지원 (생활보장팀)
- 양곡 택배비 지원
</td>
<td>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td>
</tr>
</table>

○ 기타 감면제도 및 복지서비스

구 분	지 원 대 상	문의 등
TV수신료 면제	◦ 월 수신료 면제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주거급여 제외**
주민세	◦ 개인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최대 16,000원 ※ 하절기(7,8,9월) 월 최대 20,0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최대 10,000원 ※ (하절기(7,8,9월) 월 최대 12,000원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에너지바우처 (냉,난방비 지원)	◦ 수급자로서 가구원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이 있는 가구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	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콜센터 ☎ 1600-3190
도시가스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동절기(12~3월) : 148,000원 / 비동절기(4~11월) : 9,900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동절기(12~3월) : 148,000원 / 비동절기(4~11월) : 4,950원 ◦ 교육급여 수급자 - 동절기(12~3월) : 148,000원 / 비동절기(4~11월) : 2,470원	동 행정복지센터 삼천리도시가스 ☎1544-3002
문화누리카드	◦ 1인 1카드, 1인당 연간 14만원(차년도 이월사용 불가)	동 행정복지센터 콜센터☎ 1544-3412
민원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동 행정복지센터
교통 관련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시설 수급자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한국교통안전공단 ☎ 1577-0990 **※ 주거급여 제외**

구 분	지 원 대 상	문의 등
상하수도 요금지원	◦ 상수도 매월 5,300원(가정용 월 10㎥에 해당하는 금액) ◦ 하수도 매월 4,270원(가정용 월 10㎥에 해당하는 금액)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신청한 익월부터 지원**	동 행정복지센터 **※ 주거급여 제외**
종량제봉투 지원	◦ 월 1인 40ℓ	동 행정복지센터 **※ 주거급여 제외**
통신요금감면	◦ 이동통신요금 감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감면 (월 최대 41,000원 한도)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30,000원 한도) ◦ 유선전화, 인터넷요금 등 감면 **※ 자세한 사항은 통신사에 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통신사 대리점
압류방지통장	◦ 급여 압류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	금융기관에 "수급자증명서"제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와 간병이 필요한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동 행정복지센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저소득층 가구의 0~24개월 영아 ◦ 기저귀 월 90,000원, 조제분유 월 110,000원	거주지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 주거급여 제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에게 100만원 지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 태아당 100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 주거급여 제외**
주거지원	◦ 기존주택 전세임대 ◦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LH콜센터 ☎1600-1004 (www.lh.or.kr)
우체국 공익보험	◦ 만원의 행복보험 - 만 15세 ~ 65세의 기초생활수급자	우체국예금보험 ☎1599-0100
기타 지원	◦ 서민금융지원제도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국번없이 1397 ◦ 채무조정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법률구조제도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table>
<tr><th>대상 및 지원기준</th><th>신청방법</th><th>문 의</th></tr>
<tr>
<td>

• **대 상**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성질환자 ·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보장절차 : 처리기한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신청
-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계약서, 소득 • 재산 확인서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 지자체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진단서 발급/6개월 이상 치료 필요여부 확인 및 수급자격 상실일로부터 90일 이내 소급요청 여부 확인 필요
- **조사**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확정, 소득·재산신고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공단)**
- **급여**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급여 제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시행)**

• **확인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확인조사 등**(구청)** 통해 **급여변경 및 급여중지 등 결정(공단)**

•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경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상의 변동 및 질환 부적정 등**으로 인해 **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지**
※ 공단은 질환, 연령(18세미만) 등 변동사항 조사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25년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차상위(중위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 부양의무자 기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배우자는 기존세대에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되므로 별도의 부양능력 확인 불필요

[부양능력 판정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비 고
차상위 대상자수	1인 (120%)	2,870,416	4,719,190	6,030,424	7,317,328	8,529,830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부양능력 판단함 (재산의 소득환산기준 미적용)
	2인 (130%)	3,109,617	5,112,455	6,532,959	7,927,105	9,240,650	
	3인 (140%)	3,348,818	5,505,721	7,035,494	8,536,882	9,951,469	
	4인 (150%)	3,588,020	5,898,987	7,538,030	9,146,660	10,662 288	

</td>
<td>

•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신분증 등) 및 초기상담
→
구청 (사회복지과) 소득 및 재산 조사 (보장결정 요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결정 및 통지)

</td>
<td>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td>
</tr>
</table>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 의
• **지원내용**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 대상자는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신분증 등) 및 초기상담 → 구청 (사회복지과) 소득 및 재산 조사 (보장결정 요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결정 및 통지)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분		지원내용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의 5%(중증), 10%(희귀)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65세이상 노인틀니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5%
	65세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10%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30%
만성질환자 18세미만인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20%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30~60%	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단, 1세미만 영유아는 5% 또는 면제
	65세이상 노인틀니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15%
	65세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20%
	심·뇌혈관 질환자	요양급여비용의 5%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입원수술시 30일) 기본식대의 20%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40%

*추나요법 :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 적용

-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기존 세대에서 별도세대로 분리 후 산정된 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체계]

추진주체		기 능
국민건강보험공단	본 부	- 차상위 업무 집행 총괄 - 대상자 자격관리 및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 자격조회, 자격관리 시스템 개선 등
	각지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결정 및 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및 지원	- 심사 및 청구프로그램 운영 등 - 요양급여내역 심사 및 내역 통보
시군구 (읍면동)	읍면동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서 접수·등록
	통합조사팀	- 대상자 조사 및 조사내역 공단에 통보
요양기관	담당자	-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자격확인 후 요양급여 실시
차상위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 안내문 수령, 변동사항 공단 및 관할 시군구 즉시 신고

취약계층 자립기반 조성 및 일상돌봄서비스

□ 자활사업

<table>
<tr><th>대상 및 지원기준</th><th>신청방법</th><th>문 의</th></tr>
<tr>
<td>
• 자활사업이란?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참여자의 자활 능력과 사업 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으로 구분)
• 자활사업 참여자격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18세이상 64세 이하)
- 자활급여특례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 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참여 희망자(단, 정신질환, 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하에 참여 제한 가능)
- 특례수급자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중 비수급권자
• 지원내용 : 일자리 유형 및 참여자 수, 근로조건 등
<table>
<tr><th>구분</th><th>계
(명)</th><th>근로유지형</th><th>사회
서비스형</th><th>시장진입형</th><th>기타
(복지도우미 등)</th></tr>
<tr><td>참여자수</td><td>743</td><td>10</td><td>343</td><td>207</td><td>183</td></tr>
<tr><td>주요사업</td><td></td><td>행정복지센터 공공근로</td><td>화초, 복지간병, 임가공, 공방체험 인테리어, 국수애 헤이클린 에어콘 살균세척 등</td><td>클린, 택배, 외가(반찬), 라라워시, 홈패션 제작, CU편의점, 청년카페, 정부양곡배송 등</td><td>자활지원 상담, 청년자립도전, 인턴도우미, 자활기업 등</td></tr>
<tr><td>근로조건</td><td></td><td>1일 5시간, 주5일, 표준 월소득 75만원</td><td>1일 8시간, 주5일, 표준 월소득 135만원</td><td>1일 8시간, 주5일, 표준 월소득 156만원</td><td>표준 월소득 150만원 (유형에 따라 근로시간 및 월소득 상이)</td></tr>
</table>
</td>
<td>
•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신분증 등) 및 초기상담
→
구청(사회복지과) 근로능력 판정 요청(국민연금공단-접수 후 21일 이내 통지), 보장결정 요청
→
시청
(각 사업팀) 보장결정 및 통지,
(자활지원팀) 자활지원계획 수립(조건부 수급자 및 희망 참여자)
</td>
<td>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td>
</tr>
</table>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참여인원	비고
수원 지역자활센터	팔달구 중부대로 6 (중동, 신원빌딩 3층)	031-232-0179	265명	
우만 지역자활센터	팔달구 장다리로 201, 세민빌딩 8층 (인계동)	031-231-9208	248명	
희망 지역자활센터	장안구 수성로 274, 거영빌딩 6층 (영화동)	031-257-3991	230명	

□ 자산형성지원사업

<table>
<tr><th colspan="8">대상 및 지원기준</th><th>신청방법</th><th>문 의</th></tr>
<tr><td colspan="8">• 자산형성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년 및 지자체장 선정 근로빈곤층(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함

• 자산형성지원사업(舊 통장) 세부내용</td><td rowspan="2">• 신규신청 중단</td><td rowspan="2">•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사례관리 담당 지역 자활센터
• 자산형성 콜센터 (1522-3690)</td></tr>
<tr><td colspan="8"><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희망키움 통장1</th><th>희망키움 통장2</th><th>내일키움 통장</th><th>청년희망 키움통장</th><th>청년저축 계좌</th></tr>
<tr><td colspan="2">가입 대상</td><td>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td><td>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td><td>자활근로사업 참여자</td><td>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 (만15~39세)</td><td>일하는 주거·교육 급여가구 및 차상위 가구 수급청년 (만15세~39세)</td></tr>
<tr><td rowspan="2">적립내용</td><td>지원내역</td><td>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153,000~ 779,000원) (2024년기준) + 민간매칭금 2만원 (본인 저축시)</td><td>본인 저축액 1:1 매칭 (월10만원)</td><td>본인 저축액 1:1 매칭 (최대10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사업단 매출액 1:1 or 1:0.5) + 내일키움수익금 (최대 월15만원)</td><td>본인소득 비례 일정비율 (월 최대 724,000원) + 민간매칭금 (본인 저축 시 1:1 매칭 월 최대 2만원)</td><td>본인저축액 1:3 매칭</td></tr>
<tr><td>3년 최대 적립액</td><td>3,236만원 (2024년기준)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td><td>720만원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td><td>2,340만원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td><td>2,966만원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td><td>1,440만원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td></tr>
<tr><td colspan="2">지원 조건</td><td>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td><td>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td><td>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 취·창업</td><td>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td><td>자립역량교육 이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 colspan="3">대상 및 지원기준</th><th>신청방법</th><th>문 의</th></tr>
<tr>
<td colspan="3">

• 자산형성지원사업(新 통장) 세부내용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희망저축
계좌 I</th><th>희망저축
계좌II</th><th>청년내일
저축계좌
(차상위이하)</th><th>청년내일
저축계좌
(차상위초과)</th></tr>
<tr><td colspan="2">가입
대상</td><td>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td><td>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td><td>일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1,196,006원)
청년
(15~39세)</td><td>일하는 기준
중위소득
50~100%
(1인 가구
1,196,006원~
2,392,013원)
청년
(19~34세)</td></tr>
<tr><td rowspan="2">적립내용</td><td>지원내역</td><td>월 10만원
~50만원
저축시
30만원 정액
매칭</td><td>월 10만원
~50만원
저축시
연차별
10~30만원
매칭*</td><td>월 10만원
~50만원
저축시
30만원 정액
매칭</td><td>월 10만원
~50만원
저축시
10만원 정액
매칭</td></tr>
<tr><td>3년평균적립액</td><td>1,440만원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td><td>1,080만원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td><td>1,440만원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td><td>72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td></tr>
<tr><td colspan="2">지원
조건</td><td>3년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유예기간 6개월)</td><td>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td><td>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td><td>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td></tr>
</table>

※ 희망저축계좌II 2025년 가입자부터 1년차(10만원), 2년차(20만원), 3년차(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II 2025년 이전 가입자는 매월 10만원 정액 매칭하여 본인저축 포함 720만원 지원

</td>
<td>

• 신청기간
(본인, 가구원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신분증 등)
→
구청
(사회복지과)
지원대상자 선정
(희망저축계좌II,
청년내일저축계좌)
→
시청
(자활지원팀)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
가입자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하나은행)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원금 계좌 생성
→
시청/구청
근로소득장려금 및
근로소득공제금
생성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td>
<td>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사례관리
담당 지역
자활센터
• 자산형성
콜센터
(1522-3690)

</td>
</tr>
</table>

일상돌봄서비스

○ "일상돌봄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수준에 무관하게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대상

- 돌봄 필요 청·중장년(19~64세), 가족돌봄 청년(9~39세)
  - 지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 선정 및 지원기준

- 차등 지원(소득 기준별 정부지원금 + 이용자 본인 부담금)

소득 기준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	5%
기준 중위소득 120%(4인기준 월 7,318,000원) 이하	10%	15%
기준 중위소득 120~160%(4인기준 월 9,757,000원) 이하	25%	3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100%	100%

○ 지원내용 : 재가돌봄 등 8개 서비스

(단위 : 개소, 원)

서비스 유형	서비스 종류		제공기관	서비스 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바우처 총액 (1인당/월)		
계	8		21					
기본	재가돌봄·가사 ※ 1시간 / 25,000원		4	가사, 재가돌봄, 긴급돌봄, 일상지원	소득기준 없음 (연령·가구 기준, 서비스 욕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돌봄가사	A형	660,000
							C형	1,320,000
						가사	B형	432,000
특화	청년·중장년	식사·영양관리 ※ 1식 / 32,500원	1	반찬, 도시락, 조리식품 배달		260,000		
		병원 동행 ※ 1시간 / 17,000원	4	병원 접수·수납, 진료 동행, 입·퇴원 지원 등		272,000		
		심리 지원 ※ 1회 / 60,000원	4	맞춤형 전문 심리지원		240,000		
		찾아가는 맞춤재활 ※ 1회 / 60,000원	2	방문 맞춤형 운동 재활 등		240,000		
		세탁 ※ 1회 / 50,000원	1	침구류 등 기계 세탁		50,000		
	청년	독립생활지원 ※ 1회 / 66,666원	1	인생·재무설계, 청년 자립교육		200,000		
		신체 건강증진 ※ 1회 / 30,000원	4	근력, 체력증진 등 맞춤 운동 지원		240,000		

○ 일상돌봄서비스 신청

• 洞 행정복지센터

○ 일상돌봄서비스(사회서비스 이용권 활용) 제공 절차

제공기관 선택 (이용자) ⇨ 서비스 제공 (제공기관) ⇨ 바우처 결제 (이용자) ⇨ 제공기관으로 비용지급 (사회보장정보원)

【 참고자료 】

•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871,000	102,613	22,380	-
2인	4,720,000	168,410	105,787	170,193
3인	6,031,000	215,933	151,146	219,196
4인	7,318,000	261,360	208,471	266,302
5인	8,530,000	302,462	260,307	311,031
6인	9,678,000	354,964	320,449	369,517
7인	10,787,000	386,684	357,963	407,092
8인	11,895,000	431,294	411,250	461,699
9인	13,003,000	461,699	447,279	506,004
10인	14,112,000	506,004	496,008	552,230

- 기준 중위소득 160%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828,000	136,981	66,857	-
2인	6,293,000	225,915	162,782	229,454
3인	8,041,000	288,617	243,019	295,134
4인	9,757,000	354,964	320,449	369,517
5인	11,374,000	407,092	382,076	431,294
6인	12,904,000	461,699	447,279	506,004
7인	14,382,000	552,230	545,970	599,810
8인	15,860,000	599,810	591,277	673,463
9인	17,338,000	673,463	654,281	792,926
10인	18,815,000	673,463	654,281	792,926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등 지원

<table>
<tr><th>대상 및 지원기준</th><th>신청방법</th><th>문 의</th></tr>
<tr><td>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지급
시기</th><th colspan="2">지급대상</th><th>지급액
(만원)</th><th>비고</th></tr>
<tr><td rowspan="2">보훈
명예
수당</td><td>참전</td><td>매월
25일</td><td rowspan="2">① 매월1일 수원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중
② 65세 이상자
(59년 생일월부터 지급)
<u>*재외국민 지급 可</u></td><td>6.25, 월남 참전유공자</td><td>10</td><td></td></tr>
<tr><td>보훈</td><td>매월
25일</td><td>그 외 국가유공자</td><td>8</td><td></td></tr>
<tr><td colspan="2">사망위로금</td><td>매월
25일</td><td colspan="2">사망일 당시 수원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나이 무관)</td><td>20</td><td></td></tr>
<tr><td colspan="2">보훈가족
위문금</td><td>6월중
(연1회)</td><td colspan="2">수원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td><td>3</td><td></td></tr>
<tr><td colspan="2">道 생활
보조보훈수당</td><td>매월
25일</td><td colspan="2">중위소득 50%이하(1인기준 119만원)
국가보훈 대상자(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td><td>10</td><td></td></tr>
<tr><td colspan="2">道 참전
명예수당</td><td>6월중
(연1회)</td><td colspan="2">기준일(6.15.) 수원시 거주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td><td>60</td><td></td></tr>
<tr><td colspan="2">道5·18민주
유공자
생활지원
보훈수당</td><td>매월
25일</td><td colspan="2">중위소득 100%이하(1인기준239만원)
5·18 민주유공자</td><td>10</td><td></td></tr>
<tr><td colspan="2">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문</td><td>8월 중
(연1회)</td><td colspan="2">수원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및 유족(190명)</td><td>10</td><td></td></tr>
<tr><td colspan="2">독립유공자
의료비
(약제비) 지원</td><td>매월말
(신청분)</td><td colspan="2">보훈처의 진료증 발급대상자(독립유공자,유족) 및 배우자
※약국 및 병원에서 교부신청)</td><td>-</td><td>경기도립
의료원
수원병원
등
11개소</td></tr>
</table>

•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유족)증

</td><td>• 연중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
→
대상자 결정 및 지원
(시 복지정책과)</td><td>•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td></tr>
</table>

○ 보훈회관 운영

시 설 명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비고
보훈회관	정기성	권선구 호매실로 225 (호매실동)	253-8606	

지역복지 증진(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사회복지관 운영

대상 및 주요사업	이용방법	문 의
• **사회복지관** : **5개소** • **이 용 대 상** :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진 모든 지역주민 • **서비스 내용** -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 문제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사례발굴 및 개입, 서비스 연계,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 등)	• 연중	•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관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고
연무사회복지관	장안구 창룡대로 151번길 8 (연무동)	031-245-7576	
능실종합사회복지관	권선구 호매실로 166번길 10 (호매실동)	031-291-8475	
우만종합사회복지관	팔달구 창룡대로 210번길 13 (우만동)	031-254-1992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영통구 반달로 45 (영통동)	031-201-8300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영통구 대학2로 41 (이의동)	031-212-7255	

□ 푸드뱅크사업 추진

대상 및 주요사업	이용방법	문 의
•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장 운영** : **5개소** • **이 용 대 상** :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 • **서비스 내용** -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물적 나눔 지원	• 연중	• 푸드뱅크

○ 푸드뱅크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고
수원시 해누리푸드마켓	팔달구 매산로 86(매산동)	031-238-1378	
수원푸드뱅크	팔달구 매산로 86(매산동)	031-238-1378	
장안푸드뱅크	장안구 장안로 63번길 8(영화동)	031-271-1377	
팔도푸드뱅크	권선구 새터로 47번길 88(세류동)	031-221-9004	
영통푸드뱅크	영통구 매봉로 27번길 40, 1층 (매탄동)	031-212-1641	

수원 새빛돌봄(누구나) 사업

○ "수원새빛돌봄(누구나)서비스"란?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내 돌봄기능 약화로 돌봄의 사회화 요구 및 기존 돌봄의 틈새(정보, 시간, 서비스 공백) 극복을 위한 수원형 통합돌봄 사업을 도입, **2025년 확대**된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를 통해 돌봄공백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사업 시행 : 2025년 1월 1일(확대 운영)

구 분		2024년		2025년
신청자격	거주요건	수원시민 누구나(실거주자)	확대	수원시민 누구나(실거주자, **외국인 포함**)
신청자격	소득기준	(전액지원) 중위소득 75%이하 (자 부 담) 중위소득 75%초과	상향	(전액지원) **중위소득 120%이하, 국가유공자** (차등지원) 120%초과~150%미만 50% (자 부 담) 150%이상
비용지원		1인당 1,000천원(한도)	증가	1인당 **1,500천원**(한도)
지원내용	기본형	■ 방문가사 ■ 동행지원 ■ 심리상담 ■ 일시보호 (4대 돌봄서비스)	확대	**확대형** ■ 생활돌봄 ■ 동행돌봄 ■ **주거안전** ■ 식사지원 ■ 일시보호 ■ **재활돌봄** ■ 심리상담 **(7대 돌봄서비스)**

○ 사업대상 및 지원내용

-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 누구나(실거주자, 외국인* 포함)

  * 관내 체류지 신고가 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한 외국인(결혼이민자 등)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국가유공자

  ※ 120%초과~150%이하 50% 지원 / 150% 초과자 자부담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돌봄비용 지원**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비 고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기준 중위소득 120%	2,871,000	4,720,000	6,031,000	7,318,000	
기준 중위소득 150%	3,589,000	5,899,000	7,539,000	9,147,000	

☞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비 고
직장 건강보험료	102,613	168,410	215,933	261,360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지역 건강보험료	22,380	105,787	151,146	208,471	
혼 합 가 입 자	-	170,193	219,196	266,302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 홈페이지 www.nhis.or.kr

○ 사업내용 : 7대 15종 서비스

확대형 서비스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① 신체활동 지원 ② 가사활동 지원	③ 병원동행 ④ 일상생활 업무동행	⑤ 소모품교체/부분수리 ⑥ 대청소 ⑦ 소독방역	⑧ 일반식 제공 ⑨ 죽식 제공	⑩ 단기보호 ⑪ 반려동물 일시보호	⑫ 맞춤형 운동재활	⑬ 성인상담 ⑭ 아동·청소년 상담 ⑮ 중독관리 상담

○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 신청

- 洞 돌봄전담 창구(돌봄플래너 배치)
- 휴먼콜센터(1899-3300)
- 모바일앱(새빛톡톡)

○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 제공 절차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 **자격확인 및 돌봄계획 수립** (동 돌봄플래너 현장방문, 돌봄필요도 평가) ⇨ **돌봄비용 지원 결정부여**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계약 체결) ⇨ **서비스 연계** (제공인력 파견 서비스 진행) ⇨ **서비스 평가 및 사후관리** (서비스 종결 및 모니터링)

○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 세부내용(7대 15종)

구분	정 의	서비스 내용	이용한도 (기본원칙)	지원비용	주요 제공기관
생활 돌봄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 돌봄 서비스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 화장실 이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 식사, 설거지 등 준비	연간 최대 60시간 (원칙상 60일 이내) ※일/8시간까지 가능	1시간 이상 24,580원 (노인장기요양방문급여 수가적용)	·재가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기관 ·사회적기업 등
동행 돌봄	거동불편, 질병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동행돌봄 서비스	▶병원 동행 - 출발, 귀가시 동행 - 병원 진료 동행 등 ▶일상생활업무 동행 - 관공서, 은행 등	연간 최대 60시간 (원칙상 60일 이내) ※일/8시간까지 가능	1시간 이상 24,520원 (25년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재가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기관 ·사회적기업 등
주거 안전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 보수 및 대청소, 소독·방역 서비스	▶간단한 소모품 교체 및 부분수리 - 형광등, 손잡이 교체, 방충망, 못박기 등	연간 최대 60시간 (원칙상 60일 이내) ※일/8시간까지 가능	1시간 이상 24,520원 (25년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사회복지기관 ·지역자활센터 ·사회적기업 등
식사 지원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 제공 서비스	▶일반식, 죽식, 제공	연간 최대 45식 (원칙상 60일 이내)	1식당 11,000원	·사회복지기관 ·지역자활센터 ·사회적기업 등
일시 보호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입소보호 서비스	▶시설 내에서 대상자에게 규칙적 식사제공 및 수발 지원	연간 최대 15일 이내	1일 71,970원 (장기요양보험 단기보호 급여기준) ※1인 10만원, 4일이하 5만원 추가지원	·장기요양시설 ·노인양로시설 ·단기보호시설 ·생활시설(장애인 등)
	반려동물(견) 일시보호	▶ 보호자의 부상이나 부재시 반려동물(견) 일시보호	연간 최대 16일 이내	1박 소형견 35,000원 중형견 40,000원 대형견 50,000원 ※ 추가비용 2만원 (이송,입질 등)	
재활 돌봄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재활서비스 제공	▶맞춤형 운동재활 서비스, 일상생활 수행훈련 등	연간 최대 10회 이내 (1주/1~2회에 1시간이내)	1시간 60,000원 (일상돌봄 맞춤재활서비스 기준)	·서비스제공기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심리 상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심리상담 제공	▶심리·정서적인 문제 (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지원	연간 최대 10회 이내 (1주/1~2회에 1시간이내)	1시간 아동·청소년 60,000원 성인, 중독상담 80,000원	·심리상담센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수원새빛돌봄 주민제안형 서비스

-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
- 제안대상 : 도움이 필요한 시민 등 지역주민 누구나
- 제안안건 : 마을 단위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 제안창구 : 새빛톡톡 제안토론, 동(洞) 행정복지센터 돌봄플래너,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 주요내용 :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주민이 제안한 돌봄 서비스를 심의하여 마을단위 자체 해결방안 모색 등
- 제공주체 : 새빛돌보미, 자원봉사단체, 서비스 제공기관 등
- 추진절차

안건상정		제안심사		의견수렴		공모·선정		실 시		비용지급
새빛톡톡, 동(同)창구	⇨	부서심사	⇨	정책에 따른 수요조사	⇨	제공기관 선정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비용지급
주민 누구나		(시) 돌봄정책과		(동) 지역주민		시 ↔ 민·관·학 통합돌봄 추진위원회		제공기관		구 → 제공기관

○ 수원새빛돌봄 시민참여형 서비스

- 사업기간 : 2025년 2월 ~ 12월

`25.2月		3~4月		4月		5~11月		12~`26.1月
모집공고 (신청·접수)	▶	서류심사 및 선정/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사업확정)	▶	보조금 신청 검토 및 교부	▶	사업홍보(모집)/ 공모사업 추진	▶	정산 및 결과보고
돌봄정책과		돌봄정책과 예산재정과		돌봄정책과		돌봄정책과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돌봄정책과

- 사업방법 : 시민참여형 공모사업
- 공모주제 : **시민참여형 돌봄공동체 조성 임신부 가사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수원시 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임신부**(실거주자, 외국인* 포함)

  ※ 관내 체류지 신고가 된「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한 외국인(결혼이민자 등)

  ☞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거주하고 의료기관의 임신사실이 확인·진단된 출산 전 임신부(출산 후 지원불가)

- 지원내용 및 방법

  - 임신부 대상 공동체 사업 지원 ➔ 제공기관 프로그램 직접 수행
  - 가사서비스(청소,정리정돈 등) 지원 ➔ 서비스 先 이용 후 비용청구 시 後 지원

- 지원금액 : 임신부 1인당 500천원 한도 ※ **가사지원사업 300천원 포함**
- 사 업 비 : 100,000천원(사회복지사업보조)

  ※ 1개 단체(기관)별 5,000천원~20,000천원 지원, 사업내용 및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가능

- 사 업 량 : 임신부 200가구 정도

어려움 극복! 위기가정 지원

□ 긴급복지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 의
• **대 상**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긴급복지-국비)**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위기사유(경기도형 긴급복지)** ▶ 상기「긴급복지지원법」위기 상황 모두 포함 ▶ 시설퇴소 아동 ▶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하기 위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때 ▶ 과다채무 또는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장절차 : 총 72시간 이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선지원 후조사)**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신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등 가능) - **서류** : 현장확인서, 긴급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 또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긴급지원 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등 - **결정** :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원결정 - **지원** : **결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긴급지원 실시** - **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상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요청 후 1개월 내 사후조사 실시	•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신분증 등) 및 초기상담 → 시청 (돌봄정책과) 결정 및 지원, 사후조사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 및 지원기준	문 의

• **긴급복지 지원 선정기준**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비 고
2025년 기준중위 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기준중위 소득 **75%** **국비 긴급복지**	1,794,010	2,949,494	3,769,015	4,573,330	5,331,144	-일반재산 241백만원 -금융(6백만원 + 가구별 생활준비금)
기준중위 소득 **100%** **경기도형 긴급복지**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일반재산 372백만원 -금융(12백만원 + 가구별 생활준비금)

• **긴급복지 지원 내용 :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연료비, 해산 · 장제비 등**

구 분			지 원 내 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
금전현물지원	위기상황 주급여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3개월 생계유지비	1,872천원 (4인기준)	6회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62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 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 비용 지급	1,494천원 이내 (4인기준)	6회
	부가급여	교육	• 초·중·고교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초 127.9천원 - 중 180천원 - 고 214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0천원/월 - 해산비(70만원) · 장제비(80만원) · 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 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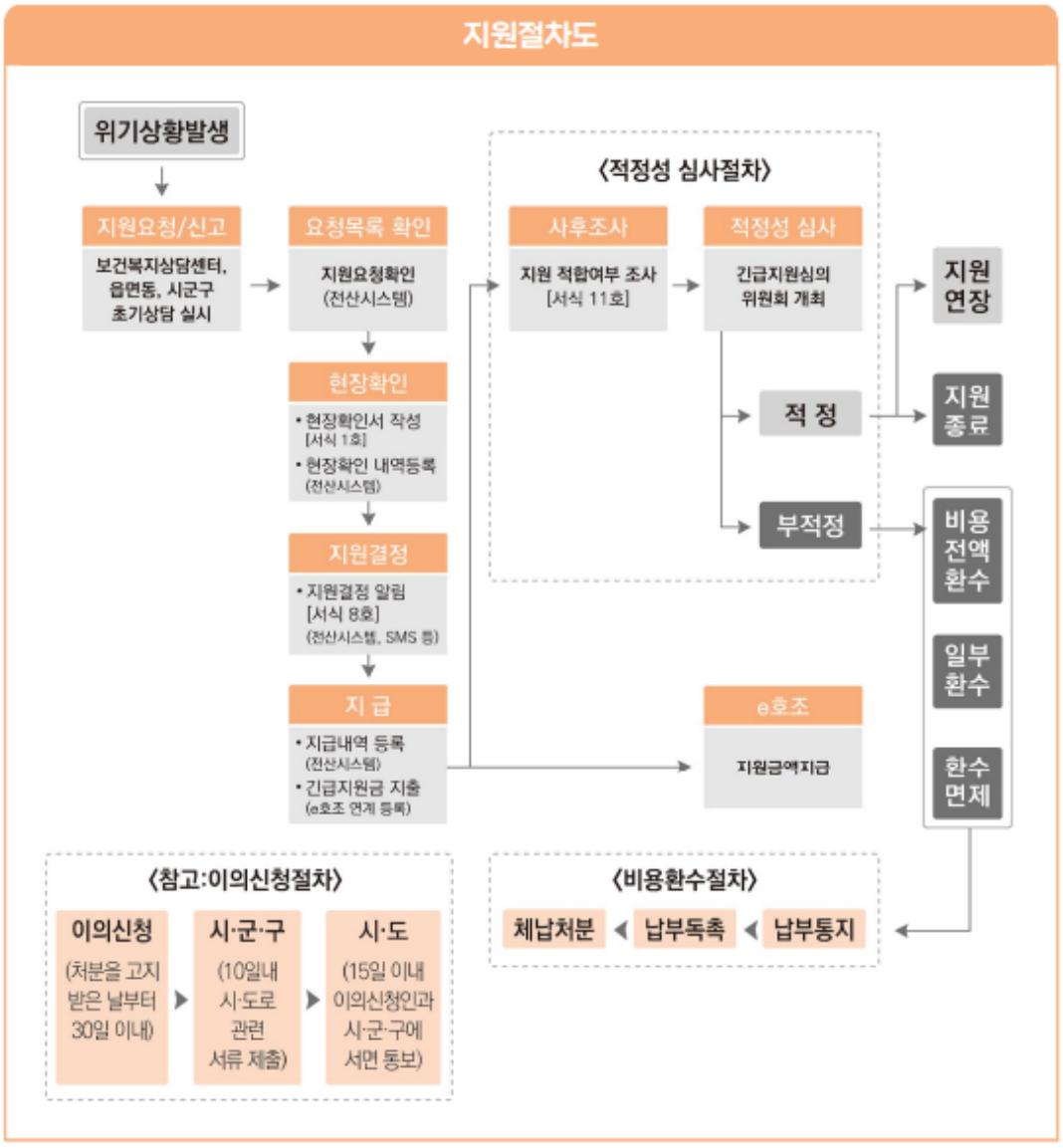
- **지원 세부기준**

▶ ①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 ②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 및 지원기준	문 의
• 긴급지원 절차 - 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등)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 / 1개월 이내) → 적정성 심사(3개월이내 / 사후조사 보고서 자료 토대) → 적정(종료 또는 지원 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 현장 확인은 지체 없이 실시하고, 사후조사 결과 기준 초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 결정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 및 지원기준	문 의

• **긴급지원(국비) 및 무한돌봄사업(경기도) 비교표**

구 분	긴급지원사업	경기도형 긴급복지
시행기관	**보건복지부**	**경기도**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 충족하면서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으로서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지원원칙	·선지원 후처리 – 사후조사 실시 ·단기 지원 급여에 따라 최대 6~12개월 ·타법률 지원 우선 ·가구 단위 지원	·선지원 후처리 – 사후조사 실시 ·단기 지원 급여에 따라 최대 6~12개월 ·타법률 지원 우선 ·가구 단위 지원
지원기준	·위기사유 : 충족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4인기준 4,573천원) ·재산 : **24,100만원 이하** ·금융 : **600만원**+가구별 생활준비금 이하 ※ 기준표 참고	·위기사유 : 충족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4인기준 6,097천원) ·재산 : **37,200만원** 이하(대도시-시 단위) ·금융 : **1,200만원**+가구별 생활준비금 이하 ※ 기준표 참고
지원내역	·**주지원(4종)**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부가지원(5종)** 교육, 연료, 해산, 장제, 전기요금 등 ·그 밖의 민간기관 · 단체 연계 지원 ※ 상세 기준표 참고	·**주지원(5종)** 생계, 의료(**항암치료비, 간병비**※포함), 주거, **긴급통합지원**※ ·**부가지원(6종)** 교육, 연료, 해산, 장제, 전기요금, **구직활동비**※ 등 ·그 밖의 민간기관 · 단체 연계 지원 ※ **경기도형 긴급복지 특화 지원**
예산 부담율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도비 10%, 시비 90%**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 및 지원기준	문 의

• **긴급복지지원(국비)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도비) 세부 지원내역 비교표**

(단위 : 원)

사업 / 급여유형		긴급복지(보건복지부 / 국비)		경기도형 긴급복지(경기도 / 도비)			비 고
		지원기준	지원기간	지원기준		지원기간	
생계	1인	730,500	선지원 3개월 (연장 3개월)	730,500		선지원 3개월 (연장 3개월) ※ 긴급지원) 6개월 받은 경우 3개월 추가지원 불가	
	2인	1,205,000		1,205,000			
	3인	1,541,700		1,541,700			
	4인	1,872,700		1,872,700			
	5인	2,186,500		2,186,500			
	6인	2,485,400		2,485,400			
주거	1~2인	398,900	선지원 1개월 (연장 2개월 추가 9개월)	398,900	보증금 (1회) 500만원 이내	선지원 1개월 (연장 2개월 추가 9개월)	
	3~4인	662,500		662,500			
	5~6인	874,100		874,100			
의 료 비		300만원 이내 (1회 추가300만원)	1회 (1회 연장가능)	300만원 이내 (1회 추가 300만원) ▸ 항암치료 100만원 간병비 300만원포함		1회 (1회 연장 가능)	
교 육 비		-초 등 : 127,900 -중 학 생 : 180,000 -고등학생 : 214,000 및 수업료·입학금	분기 1회 (추가 생계, 시실이용1회, 주거최대3회)	-초 등 : 127,900 -중 학 생 : 180,000 -고등학생 : 214,000 및 수업료·입학금		분기 1회 (생계 추가 가구 1회 추가 지원)	
사회복지 시설이용		입소 운영비	선지원 1개월 (연장 2개월 추가 3개월)	-		-	
연 료 비		150,000 / 월	동절기 (10월~3월)	150,000 / 월		동절기 (10월~3월)	월별 지급
해 산 비		700,000 / 1인당	1회	1,000,000		1회	
장 제 비		800,000 / 1인당	1회	1,000,000		1회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50만원 이상 연체자)	1회	50만원 이내 (50만원 이상 연체자)		1회	
구직활동비		-	-	100,000		3개월 (추가 3개월)	월별 지급
긴급 통합지원		-	-	4백만원 이내 ※ 맞춤형 물품 및 생계 지원(단순 진료비 및 교통지원비 등 제외)		연 1회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가구는 지원 불가

※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은 1회만 지원
※ 연료비는 10월 ~ 3월까지 지원(생계 및 주거비 지원 시)
※ 구직활동비는 실직 가구원 및 취준생(졸업 후 1년이내)이 있는 가구로 생계 및 주거비 지원 시 지원 가능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table>
<tr><th>대상 및 지원기준</th><th>신청방법</th><th>문 의</th></tr>
<tr>
<td>

• **대 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등)**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 등급 인정받은 자**
- **장애인활동지원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시설(요양원 입소 등)**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장기요양 비용의 20% 본인부담)
- **재가(방문요양, 주야간 등)**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목욕 · 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 등 제공 **(장기요양 비용의 15% 본인부담)**
- **장기요양 등급 현황**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1등급</th><th>2등급</th><th>3등급</th><th>4등급</th><th>5등급</th><th>인지지원</th></tr>
<tr><td colspan="2">점 수</td><td>95점이상</td><td>75~94</td><td>60~74</td><td>51~59</td><td>45~50</td><td>45점미만</td></tr>
<tr><td colspan="2">상 태</td><td>침대생활 (대소변도 도움)</td><td>대부분의 행동에 도움</td><td>실내에서 보장구로 이동가능</td><td>실외에서 보장구로 이동가능</td><td>치매특별등급으로 치매진단 받은 경증환자</td><td>45점미만이라도 치매 확인된 사람</td></tr>
<tr><td rowspan="2">이용가능</td><td>시설</td><td>○</td><td>○</td><td colspan="3">보호자 유무 등 경우에 따라 가능</td><td>X</td></tr>
<tr><td>재가</td><td>○</td><td>○</td><td>○</td><td>○</td><td>○</td><td>주야간보호</td></tr>
</table>

• **장기요양인정 신청**
- 신청장소 : 전국 국민건강관리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 조 사 자 : 국민건강관리공단 직원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자녀집에서도 가능) 방문조사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인지기능, 행동변화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

•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절차**



</td>
<td>

• 연중
• 국민건강 보험공단 노인장기 요양보험 운영센터 방문 등 신청

</td>
<td>

• 국민건강 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 수원서부지사 (장안·권선) ☏ 031-240-4252
• 수원동부지사 (팔달·영통) ☏ 031-230-9257

</td>
</tr>
</table>

□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table>
<tr><th>대상 및 지원기준</th><th>신청방법</th><th>문 의</th></tr>
<tr>
<td>
• 대 상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거·조손·고령부부,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가 포기하고, 신청 불가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대상자 군 결정 / 서비스 이용자격 승인 1년)
*선정도구 :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 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 산정
<table>
<tr><th>대상자 군</th><th>서비스 내용</th></tr>
<tr><td>중점돌봄군</td><td>월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td></tr>
<tr><td>일반돌봄군</td><td>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td></tr>
</table>
• 지원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table>
<tr><th>구 분</th><th>서비스 내용</th></tr>
<tr><td rowspan="4">직접 서비스</td><td>안전지원(방문 및 전화 안전, ICT 안전지원)</td></tr>
<tr><td>사회참여(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td></tr>
<tr><td>생활교육[신체건강(영양·보건·건강교육), 정신건강(우울예방, 인지활동프로그램)]</td></tr>
<tr><td>일상생활 지원[이동활동지원(외출동행), 가사지원(식사·청소관리)]</td></tr>
<tr><td>연계 서비스</td><td>생활지원(생활용품, 식료품, 후원금 지원),
주거개선(주거위생 및 환경개선 지원),
건강지원(의료연계, 건강보조 지원),
기타(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td></tr>
<tr><td>특화 서비스</td><td>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지원 등</td></tr>
</table>
</td>
<td>•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신분증 등)→ 수행기관에서 상담 및 조사→ 대상자 결정 (시군구)</td>
<td>•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td>
</tr>
</table>

□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table>
<tr><th>대상 및 지원기준</th><th>신청방법</th><th>문 의</th></tr>
<tr>
<td>
• 대 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중
-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 노인 2인 가구, 조손가구
• 지원내용
독거노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
</td>
<td>• 연중
• 대상자 발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수행기관) → 신청서 제출→ 대상자 승인 (시군구)</td>
<td>•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td>
</tr>
</table>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 의
• **대 상**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우선순위 :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장기요양 등급외자 등** • **지원내용** **가사·일상생활지원, 신변·활동지원, 안부·안전 확인, 사례관리, 상담, 후원·결연 등**	• 연중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수행기관에서 상담 및 결정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6개소

(단위 : 명)

시 설 명	소 재 지	종사자	전화번호	비고
효경의손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장안구 경수대로 754번길 26-17 (연무동)	5	253-0070	
서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권선구 구운로 4번길 34 (구운동)	5	296-1808	
수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권선구 세권로 42번길 6 (세류동)	5	237-0179	
우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팔달구 월드컵로 355 2층 (우만동)	5	248-2815	
청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장안구 장안로 174(정자동)	5	257-6815	
수원YWCA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장안구 정자천로 134번길 34	5	252-5111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 기초연금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 의
• **대상 및 지원금액**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구 분 /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 월 최대금액** **단독가구 / 228만원 / 342,510원** **부부가구 / 364만8천원 / 548,000원** •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	• 연중 (65세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대상자 결정 (시 노인복지과)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효도수당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 의
• **대 상**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가정**을 이루어 **동일 주소지**에 **5년 이상 수원시 연속거주** • **지원내용** **반기별 5만원 지급(가구당)** ※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세대분리) 등 3세대 가정 구성요건 소멸된 경우 지급 중지 • **구비서류** : 신청서 등	• 연중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직계비속으로 실제 어르신을 부양하고 있는 자) → 대상자 결정 (각 구청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효사랑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 의
• **대 상** **85세 이상** 어르신 중 **수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자** - 단, 1년 이상 장기 출타자는 제외 • **지원내용** **분기별 6만원 지급(개인당)** ※ 85세 생일이 되는 다음달부터 지급 •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신분증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만)	• 연중 • 행정복지센터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 대상자 결정 (각 구청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table>
<tr><th>대상 및 지원기준</th><th>신청방법</th><th>문 의</th></tr>
<tr>
<td>
• 대 상
60세 이상 일자리 희망자(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 지원내용
일자리 유형 및 참여자 수, 근로조건 등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계
(명)</th><th>사회활동</th><th colspan="3">노인일자리</th></tr>
<tr><th>노인공익
활동사업</th><th>노인역량
활용사업</th><th>공동체사업단</th><th>취업지원</th></tr>
<tr><td>참여
자수</td><td>7,329</td><td>4,750</td><td>1,740</td><td>609</td><td>230</td></tr>
<tr><td>주요
사업</td><td></td><td>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 등</td><td>보육시설 지원,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전문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
활동 지원 등</td><td>식품제조 및판매,
카페 운영 등
(고소미도넛,
뻥튀기, 여민
동락북카페,
은빛사항공동
작업장, 학원
지원서비스 등)</td><td>관리사무(경영,
영업, 판매,
운송 등)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생산·제조 등
단순노무직
등 알선</td></tr>
<tr><td>근로
조건</td><td></td><td>월30시간,
29만원
활동수당</td><td>월60시간,
월 63.4만원
(연차수당
별도)</td><td>1일 최대
8시간 이내,
최저임금 이상</td><td>수요처와
연계(근로계약
서상 시간,
최저임금 이상)</td></tr>
<tr><td>비고</td><td></td><td>65세 이상
직역연금수급자</td><td>65세 이상
(일부 60세)</td><td>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td><td>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td></tr>
</table>
</td>
<td>• 전년도 11~12월
• 수행기관 또는 온라인 신청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대상자 결정 (수행기관)</td>
<td>• 노인일자리 상담안내 (☏1544-3388)
• 수원시니어클럽 (☏031-202-1435)</td>
</tr>
</table>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고
1	수원시니어클럽	팔달구 수성로182번길 85 (화서동)	031-202-1435	
2	경기도실버자원봉사회	팔달구 화양로67번길 3 (화서동)	031-245-1515	
3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	장안구 수성로340번길 30 (영화동)	031-257-1999	
4	대한노인회 권선구지회	권선구 구운로4번길 34 (구운동)	031-291-0849	
5	대한노인회 팔달구지회	팔달구 수원천로 347 (북수동)	031-245-2386	
6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영통구 영통로 396 (영통동)	031-206-8858	
7	SK청솔노인복지관	장안구 장안로 174 (정자동)	031-257-6811	
8	서호노인복지관	권선구 구운로4번길 34 (구운동)	031-291-0911	
9	버드내노인복지관	권선구 권선로 564번길 36 (세류동)	031-898-6544	
10	광교노인복지관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22 (이의동)	031-8006-7400	
11	밤밭노인복지관	장안구 상률로 53 (율전동)	031-271-8859	
12	팔달노인복지관	팔달구 수원천로 343 (북수동)	031-248-3800	
13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영통구 반달로 45 (영통동)	031-201-8329	
14	우만종합사회복지관	팔달구 창룡대로210번길 13 (우만동)	031-254-1992	

□ 경로당 및 대한노인회 지회 (노인대학 운영 등)

구 분	대상 및 주요사업	이용방법	문 의
경로당	• **대 상** **65세 이상 어르신(경로당별 회원 가입 후 이용)** • **서비스 내용** - 민요, 요가, 노래교실 등 여가활동 지원 - 지역내 환경지킴이,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등 사회공헌활동 등	• 연중 • 주소지 경로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인회지회	• **대 상** **65세 이상 어르신** • **서비스 내용** - **노인의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핵심지도자 교육, 노인지도자 대회 등) - **노인대학 운영 지원** (생활교육 및 건강교실 운영 등) - **활기넘치는 제2의 인생구현 지원** (그라운드 골프대회, 건강여가교실, 한궁대회 등)	• 연중 • 주소지 노인회 지회	주소지 노인회 지회 -장안구 031-242-1377 -권선구 031-291-5617 -팔달구 031-245-2388 -영통구 031-206-0010

□ 노인복지관 운영

대상 및 주요사업	이용방법	문 의
• **노인복지관** : **6개소** • **이 용 대 상** : **60세 이상 어르신** • **서비스 내용** - **노인 여가 · 건강 · 일자리 · 자원봉사 · 사회참여 등**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 - **경로식당 무료급식,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 연중 • 관내 노인복지관	관내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관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 고
SK청솔노인복지관	장안구 장안로 174 (정자동)	031-257-6811	
밤밭노인복지관	장안구 상률로 53 (율전동)	031-271-8859	
서호노인복지관	권선구 구운로 4번길 34 (구운동)	031-291-0911	
버드내노인복지관	권선구 권선로 564번길 36 (세류동)	031-898-6544	
팔달노인복지관	팔달구 수원천로 343 (북수동)	031-248-3800	
광교노인복지관	본관)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22 (이의동)	031-8006-7400	
	분관) 영통구 월드컵로 150번길 55(원천동)	031-8006-7440	

어르신 치매검진 등 건강 지원

<table>
<tr><th>사 업 명</th><th>대상 및 지원기준</th><th>신청방법</th><th>문 의</th></tr>
<tr>
<td>치매
검진 지원</td>
<td>• 대 상
- 선별검사 :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 진단검사비 지원 : 만 60세 이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4인기준 월 7,317,328원 이하 어르신
- 감별검사비 지원 : 만 60세 이상 어르신
(초로기 치매환자도 지원 가능 ※ 단, 진단검사의 경우 60세 미만일 경우 비급여로 검사비 지원 불가)
• 지원내용
<table>
<tr><th>검사종류</th><th>검 사 내 용</th><th>지 원 내 용</th></tr>
<tr><td>선별검사</td><td>치매 선별
(인지선별검사)</td><td>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사전 예약)</td></tr>
<tr><td>진단검사</td><td>전문의 진찰, 치매척도·신경인지·일상생활척도 검사 등</td><td>협약병원 검사비
(15만원 한도내)</td></tr>
<tr><td>감별검사</td><td>혈액·간기능·신장기능·뇌영상 촬영 등</td><td>협약병원 검사비
(종합병원급 이하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 한도)</td></tr>
</table>
</td>
<td>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신청</td>
<td>•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
• 해당 지역 보건소
장안 228-5064
권선 228-6979
팔달 228-7794
영통 228-8411</td>
</tr>
<tr>
<td>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td>
<td>• 대 상
치매 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40% (4인 기준 월 8,536,882원 이하 어르신
※ 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 지원내용 :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간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급
• 구비서류
신분증, 대상자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상병코드가 기재된 진단서 (상병코드 F00~03, G30, G301, G308, G309중 하나이상 포함)</td>
<td>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신청</td>
<td>•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td>
</tr>
<tr>
<td>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및 지문등록</td>
<td>• 대 상
실종 위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치매환자
• 지원내용
인식표(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지급
※ 무료, 소진 시 재발급 가능
• 구비서류
대상자 및 보호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치매진단서 등</td>
<td>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신청</td>
<td>해당 지역
보건소</td>
</tr>
<tr>
<td>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td>
<td>• 대 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 지원내용
조호물품(기저귀, 물티슈, 미끄럼방지양말, 허리보호대, 요실금팬티 등) 무료 제공 ※ 지자체별 상이
• 구비서류
신분증, 처방전(상병코드 F00~03, G30, G301, G308, G309 중 하나 이상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시)</td>
<td>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신청</td>
<td>해당 지역
보건소</td>
</tr>
</table>

세 부 사 업	문 의
• **치매 예방관리** **구 분** / **지원대상 및 내용** **치매예방 교육** **[대 상]** ・지역 주민 **[지원내용]** ・치매 예방 교육(3·3·3) 실시 ・치매 예방 운동법(뇌신경체조, 치매예방체조 등) ・치매 인식개선 퀴즈 등 **[유의사항]** ・보건소별로 상이할 수 있음 **치매예방 교실** **[대 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지원내용]** ・참여인원 : 1교실당 최대 20명 ・운영회기 : 회당 60분 이상, 주 1회 이상 운영(최소 8회기 운영) ・주요내용 - 치매예방 교육 콘텐츠 및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훈련 프로그램 구성 **[유의사항]** ・보건소별로 상이할 수 있음 **인지강화 교실** **[대 상]** ・치매 고위험군 **[지원내용]** ・참여인원 : 1교실당 최대 20명 ・운영회기 : 회당 60분 이상, 주 1회 이상 운영(최소 8회기 운영) ・주요내용 - 치매예방 교육 콘텐츠 및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훈련 프로그램 구성 **[유의사항]** ・보건소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관할 시군구 보건소

세 부 사 업	문 의
• **치매 환자가족 및 보호자 지원 프로그램**	• 관할 시군구 보건소

구 분	지원대상 및 내용
치매환자 쉼터	**[대 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경증 치매환자(단,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또는 미이용자 - 장기요양 5등급자, 인지지원등급자 **[지원내용]** • 이용정원 : 쉼터 반 당 최대인원 20명 이내(1인당 최대 1년 이용) • 프로그램 운영(종이접기, 운동, 원예 등) - 인지재활 / 인지자극 / 정서지원 / 건강지원 / 특별프로그램 **[유의사항]** • 보건소별로 상이할 수 있음
가족교실	**[대 상]** • 치매환자의 가족,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의 가족(보호자 가능) **[지원내용]** • 치매 가족지원 프로그램 '헤아림', '일상의 회복' '숨은 마음찾기' 등 가족교실 운영(1~10월) **[유의사항]** • 보건소별로 상이할 수 있음
자조모임	**[대 상]** • 치매 환자의 가족,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의 가족(보호자 가능) **[지원내용]** • 치매가족 자조모임 – 월 1회 운영(2~10월) - 동반 치매환자 보호서비스 운영 - 가족카페 다과 제공, 치매 관련 정보제공 **[유의사항]** • 보건소별로 상이할 수 있음
힐링 프로그램	**[대 상]** • 치매환자의 가족,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의 가족(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자 함께 참여 가능) **[지원내용]** • 4월 힐링프로그램 진행(나들이, 원예 등) **[유의사항]** • 보건소별로 상이할 수 있음

<table>
<tr><th>사 업 명</th><th>대상 및 지원기준</th><th>신청방법</th><th>문 의</th></tr>
<tr><td colspan="4">• 60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td></tr>
<tr><td>저소득 노인
개안수술</td><td>• 대 상
- 개안수술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
• 지원내용
<table><tr><th>구 분</th><th>지 원 내 용</th></tr><tr><td>개안수술</td><td>- 공통: 1안당 150만원 내 지원(수술)
1안당 180만원 내 지원(안구내 주입술)
- 관련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
- 안구내 주입술(아바스틴·루센비에스·아밀리아 등)의 경우 1안당 3개월에 2회, 양안 4회 인정
- 후발성 백내장·망막·녹내장 등의 레이저치료비</td></tr></table></td><td>시군구 및 보건소 문의 후 신청</td><td>•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한국실명 예방재단 (☎02-718-1102)</td></tr>
<tr><td>노인틀니
지원</td><td>• 대 상
- 완전틀니 : 65세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 부분틀니 : 65세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지원내용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 시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7년에 1번)
<table><tr><th>건강보험</th><th>차상위</th><th>의료급여1종</th><th>의료급여2종</th></tr><tr><td>30%</td><td>5~15%</td><td>5%</td><td>15%</td></tr></table></td><td>• 건강보험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등록 신청
• 의료급여 : 치과 병·의원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록 신청</td><td>•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 공단 (☎1577-1000)</td></tr>
<tr><td>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td><td>• 대 상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 지원내용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table><tr><th>건강보험</th><th>차상위</th><th>의료급여1종</th><th>의료급여2종</th></tr><tr><td>30%</td><td>10~20%</td><td>10%</td><td>20%</td></tr></table></td><td>• 건강보험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등록 신청
• 의료급여 : 치과 병·의원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록 신청</td><td>•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 공단 (☎1577-1000)</td></tr>
<tr><td>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td><td>• 대 상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 서비스 내용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지원</td><td>해당 지역 보건소 신청</td><td>노인의료 나눔재단 (☎02-711-6599)</td></tr>
<tr><td>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td><td>• 대 상
65세 이상 어르신(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서비스 내용
<table><tr><th>구 분</th><th>접 종 내 용</th></tr><tr><td>폐렴구균</td><td>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 1회 지원</td></tr><tr><td>인플루엔자</td><td>인플루엔자 백신, 매년 1회 지원(하반기)</td></tr></table></td><td>전국 위탁의료기관 (신분증 지참)</td><td>관할 보건소</td></tr>
</table>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table>
<tr><th>사 업 명</th><th>대상 및 지원기준</th><th>신청방법</th><th>문 의</th></tr>
<tr><td rowspan="4">교통비</td><td rowspan="4">• 대 상 :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버스이용 유료(개별적으로 교통카드 충전 후 사용)
- 철도요금 감면
· 수도권 전철 및 지하철에 한하여 무료 이용
(단, 공항철도 직통은 제외)
※ 경기도 거주자 / G-PASS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
· KTX·새마을호·무궁화호 30% 감면
(KTX·새마을호는 토요일, 공휴일 제외)
· 통근열차 50% 감면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국내국제선 10% 감면(단, 성수기, 일부 노선 제외)
- 국내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여객운임 20% 감면</td><td>• 지하철
경기도내 농협 영업점(생신 당일부터 신청 가능
※ 단 공휴일인 경우 익일부터)
• 신분증 필요</td><td>농협 영업점
(☏1588-2100)</td></tr>
<tr><td>• KTX·새마을호 등 이용 시 신분증</td><td>코레일
(☏1544-7788)</td></tr>
<tr><td>• 항공
이용 시 신분증</td><td>대한항공
(☏1588-2001)</td></tr>
<tr><td>• 연안여객선
이용 시 신분증</td><td>한국해안조합
(☏02-6096-2000)</td></tr>
<tr><td>문화
활동비</td><td>• 대 상 :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 입장
※ 수원시(65세 이상 무료)
수원화성 및 화성행궁, 수원박물관, 수원화성 박물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이상 할인
-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입장료 50% 할인</td><td>입장 시
신분증 제시</td><td></td></tr>
<tr><td>국민건강
보험료</td><td>• 대 상 :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
• 지원기준 및 내용
-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
소득·재산요건 만족 시 최대 30% 할인
<table><tr><th>구 분</th><th>1등급</th><th>2등급</th><th>3등급</th></tr><tr><td>소 득</td><td colspan="3">360만원 이하</td></tr><tr><td>재 산</td><td>6,000만원 이하</td><td>9,000만원 이하</td><td>1억 3,500만원 이하</td></tr><tr><td>경감률</td><td>30%</td><td>20%</td><td>10%</td></tr></table>- 70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이며,
소득 360만원 이하인 경우 30% 경감</td><td>국민건강보험 공단 신청
※ 65세, 70세 도래되는 다음날부터 공단에서 자동 적용해줌</td><td>국민건강보험 공단
(☏1577-1000)</td></tr>
<tr><td>이동통신
통신요금</td><td>• 대 상 :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내용
- 기본료(월정액) 및 통화료를 합쳐 청구된 이용금액의 50% 감면
- 월 최대 11,000원 감면(부가가치세 포함)
※ 예외기준 : 알뜰폰은 전용 요금제 감면</td><td>통신사 대리점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방문 신청</td><td>통신사 고객센터
(☏114)</td></tr>
</table>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장애인등록 신청 절차 등

<table>
<tr><th>대상 및 지원기준</th><th>문 의</th></tr>
<tr><td>

• **대 상**

-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과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 **등록절차 : 공단은 장애정도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자체에 통지 (단,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연장 가능)**

<table>
<tr><td>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td><td>동 행정복지센터</td></tr>
<tr><td>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td><td>의료기관</td></tr>
<tr><td>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td><td>동 행정복지센터</td></tr>
<tr><td>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td><td>동 행정복지센터</td></tr>
<tr><td>장애심사, 결정 후 심사결과 통보</td><td>국민연금공단</td></tr>
<tr><td>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td><td>동 행정복지센터</td></tr>
<tr><td>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td><td>동 행정복지센터</td></tr>
<tr><td>민원 상담 및 사후관리</td><td>동 행정복지센터</td></tr>
</table>

• **등록장애인 복지서비스 : 별도**

</td><td>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td></tr>
</table>

□ 장애인연금 등 지원사업 신청절차

<table>
<tr><th>대상 및 지원기준</th><th>신청방법</th><th>문 의</th></tr>
<tr>
<td>
• 대 상
- 근로능력 여부 ·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보장절차 : 처리기한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신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등 가능)
-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계약서, 소득 • 재산 확인서류,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지출실태 확인서 등
- 조사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확정, 소득·재산신고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근로능력 판정 절차에 따라 근로능력 판정(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 확인)
- 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급여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급여 제공
• 확인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확인조사 등 통해 급여변경 및 급여중지 등 결정
•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 초과 시 급여중지(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 징수)
• 선정기준 (단위 : 원)
<table>
<tr><th>구 분</th><th>1인</th><th>2인</th><th>3인</th><th>4인</th><th>5인</th></tr>
<tr><td>'25년 기준 중위소득</td><td>2,392,013</td><td>3,932,658</td><td>5,025,353</td><td>6,097,773</td><td>7,108,192</td></tr>
<tr><td>차상위(중위 50%)
※ 차상위장애인 등</td><td>1,196,007</td><td>1,966,329</td><td>2,512,677</td><td>3,048,887</td><td>3,554,096</td></tr>
</table>
</td>
<td>
•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신분증 등) 및 초기상담
→
구청
(사회복지과)
소득 및 재산 조사
(보장결정 요청)
→
시청
(장애인복지과)
보장결정 및 통지, 지원 등
→
구청
(사회복지과)
지원 등
</td>
<td>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td>
</tr>
</table>

□ 장애인연금

<table>
<tr><th>대상 및 지원기준</th><th>신청방법</th><th>문 의</th></tr>
<tr>
<td>

• **대 상**
18세(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심한 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

구 분	선정 기준액	비고
단독가구	138만원 이하	
부부가구	220만8천원 이하	

• **지원내용**

구 분		장애인연금(원)				비고
		기초급여		부가급여		
		18-64세	65세이상	18-64세	65세이상	
생계 / 의료 수급자	단독	342,510	기초연금으로 전환	90,000	432,510	
	부부	548,000				
주거 / 교육 수급자 차상위 계층	단독	342,510		80,000	일반 : 8만원 (특례 : 15만원)	
	부부	548,000				
시설 수급자	단독	342,510		0	일반 : 미지급 (특례 : 8만원)	
	부부	548,000				
차상위 초과자	단독	342,510		30,000	50,000	
	부부	548,000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 지급대상 :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통장사본 등

</td>
<td>

•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분증 등) 및 초기상담
→
구청(사회복지과) 소득 및 재산 조사(보장결정 요청)
→
시청(장애인복지과) 보장결정 및 통지, 지원 등
→
구청(사회복지과) 지원 등

</td>
<td>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td>
</tr>
</table>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

<table>
<tr><th>대상 및 지원기준</th><th>신청방법</th><th>문 의</th></tr>
<tr>
<td>

• **대 상**
-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중 18세 이상 심하지 않은 장애(종전 3~6급)
-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중 18세 미만 등록 장애 아동

• **지원내용**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colspan="2">장 애 수 당(원)</th><th rowspan="2">비고</th></tr>
<tr><th>장애수당</th><th>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th></tr>
<tr><td rowspan="2">생계/
의료
수급자</td><td>단독</td><td rowspan="2">60,000</td><td>중증 220,000</td><td></td></tr>
<tr><td>부부</td><td>경증 110,000</td><td></td></tr>
<tr><td rowspan="2">주거 /
교육
수급자
차상위
계층</td><td>단독</td><td rowspan="2">60,000</td><td>중증 170,000</td><td></td></tr>
<tr><td>부부</td><td>경증 110,000</td><td></td></tr>
<tr><td rowspan="2">시설
수급자</td><td>단독</td><td rowspan="2">30,000</td><td>중증 90,000</td><td></td></tr>
<tr><td>부부</td><td>경증 30,000</td><td></td></tr>
<tr><td rowspan="2">차상위
초과자</td><td>단독</td><td rowspan="2">해당 없음</td><td rowspan="2">해당 없음</td><td></td></tr>
<tr><td>부부</td><td></td></tr>
</table>

• **구비서류** : 신청서 등
</td>
<td>

•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분증 등) 및 초기상담
→
구청(사회복지과) 소득 및 재산 조사(보장결정 요청)
→
시청(장애인복지과) 보장결정 및 통지, 지원 등
→
구청(사회복지과) 지원 등
</td>
<td>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td>
</tr>
</table>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table>
<tr><th>대상 및 지원기준</th><th>신청방법</th><th>문 의</th></tr>
<tr>
<td>
• 대 상
6세 이상 ~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등급판정자
• 지원내용
- 사업내용 :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 사회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단가
<table>
<tr><th>급여종류</th><th>분 류</th><th>금 액</th></tr>
<tr><td rowspan="3">활동보조
(시간당)</td><td>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td><td>16,620원
(가산수당 3,000원)</td></tr>
<tr><td>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td><td rowspan="2">24,930원
(가산수당 4,500원)</td></tr>
<tr><td>「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td></tr>
<tr><td rowspan="2">방문목욕
(회당)</td><td>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td><td>86,480원</td></tr>
<tr><td>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td><td>77,970원</td></tr>
<tr><td rowspan="3">방문간호
(회당)</td><td>30분 미만</td><td>41,710원</td></tr>
<tr><td>30분 이상 ~ 60분 미만</td><td>52,310원</td></tr>
<tr><td>60분 이상</td><td>62,930원</td></tr>
</table>
- 급여의 월 한도액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지원급여</th><th>지원시간</th><th>비 고</th></tr>
<tr><td colspan="2">기본급여
(1구간~15구간)</td><td>1,000~7,980천원</td><td>60시간~480시간</td><td></td></tr>
<tr><td rowspan="3">특별
지원
급여</td><td>출 산</td><td>1,332천원</td><td>80시간</td><td>6개월</td></tr>
<tr><td>자립준비</td><td>335천원</td><td>20시간</td><td>6개월</td></tr>
<tr><td>보호자
일시부재</td><td>335천원</td><td>20시간</td><td>6개월
이내</td></tr>
<tr><td colspan="2">경기도 추가급여</td><td>83~2,277천원</td><td>5시간~137시간</td><td></td></tr>
<tr><td colspan="2">수원시 추가급여</td><td>335~1,496천원</td><td>20시간~90시간</td><td></td></tr>
</table>
※ 특별지원급여 · 도 추가(가구환경, 사회생활, 특별지원)
· 시 추가(사지마비·와상, 그 외 장애인) 본인부담금은 면제
(의료급여법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2만원 정액,
차상위 초과계층은 40,000원~최대 209,200원)
</td>
<td>
•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신분증 등)→
종합조사의뢰
(시군구)→
종합조사실시
(국민연금공단)→
수급자격심의개최
(국민연금공단)→
수급자 선정 및
결정통지(시군구)
</td>
<td>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td>
</tr>
</table>

○ 제공기관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고
1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영통구 창룡대로 255(이의동)	031-548-5612	
2	버드내장애인활동지원센터	팔달구 행궁로 92, 501호(교동)	031-895-6240	
3	수원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팔달구 매산로 83, 5층 (매산로3가, 강산빌딩)	031-243-1731	
4	명은전문요양센터	장안구 정자로 166, B01호	031-242-1332	
5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수원시지부	장안구 송정로 90번길 3, 9층(정자동)	031-245-9989	
6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안구 율전로 92, 2층 (율전동, 뉴대명빌딩)	031-291-8555	
7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권선구 호매실로 211(호매실동)	031-893-2188	
8	사회복지법인브솔복지재단	영통구 중부대로 293-3, B1층(원천동)	031-213-6111	
9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권선구 산업로 156번길 201, 305호 (고색동)	031-239-6340	
10	사단법인 나눔과실천	장안구 송정로 83, 상가동 128호 (송죽동, 수원로얄팰리스)	031-252-7044	
11	재단법인 꿈행복나눔재단	권선구 곡반정로 82(곡반정동)	031-225-1020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 의
• **대 상** -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 상시 보호 필요하다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자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	• 연중 • 대상자 발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수행기관) → 신청서 제출→ 대상자 승인 (시군구)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 의
• **대 상** - 만 6세 이상 ~ 18세 미만 발달장애인 • **지원내용** - 제공기관을 통한 방과후활동 프로그램 제공 (취미여가, 직업탐구, 자립준비활동, 관람 및 자조활동 등) • **지원유형** - 월 66시간 바우처 지원 • **지원단가** - 기본단가 16,620원, 1인 서비스 및 그룹별(2~4인) 차등 단가	•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신분증 등)→ 시군구(대상자 결정 및 통지)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공기관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고
1	사단법인 해다온 복지협회 영통점	영통구 삼성로 320번길 80, 3층 (영통동)	031-273-7890	
2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	장안구 천천로 74번길 50, 노송관 1층 (정자동)	031-546-0514	
3	인영아동상담소	장안구 파장천로 136-8(파장동)	031-271-2019	
4	꿈고래사회적협동조합	권선구 금호로23번길 21, 3층(금곡동)	031-291-1658	
5	꿈틀협동조합	권선구 호매실로 104번길 90, 403호 (호매실동)	031-298-0701	
6	사단법인 해솔	영통구 영통로 509-1, 3층(영통동)	031-273-9777	
7	새품사회적협동조합	장안구 경수대로1022, 6층(파장동)	070-7761-6121	
8	열린사회적협동조합	권선구 금곡로116, 605호 (금곡동, 유동타워)	031-546-3575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 의
• **대 상**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발달장애인 • **지원내용** 제공기관을 통한 주간활동 프로그램 제공 - 참여형 : 자조모임, 산책 걷기 등 건강 증진 활동, 직장탐방, 교육 등 - 창의형 : 음악, 미술활동, 창작품 만들기, 목공예 등 • **지원유형** - 기본형 : 월 132시간 바우처 지원 - 확장형 : 월 176시간 바우처 지원 • **지원단가** - 기본단가 16,620원, 1인 서비스 및 그룹별(2~3인) 차등 단가	•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신분증 등)→ 시군구(신청자 송부)→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조사→ 심의위원회 개최 및 의결→ 시군구(대상자 결정 통보)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공기관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고
1	사단법인 해솔	영통구 영통로 509-1(영통동, 평강빌딩 3층)	031-273-9777	
2	수원중앙복지재단	팔달구 행궁로 77(팔달로3가, 송산빌딩 6층)	031-221-8550	
3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권선구 호매실로 211(호매실동)	031-893-2100	
4	사단법인 해다온 복지협회	장안구 정조로1053번길 35, 3층(송죽동)	031-242-7890	
5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영통구 창룡대로 255(이의동)	031-548-5612	
6	인영아동상담소	장안구 파장천로 136-8(파장동)	031-271-2019	
7	사단법인 해다온 복지협회 영통점	영통구 삼성로320번길 80, 3층(영통동)	031-273-7890	
8	더열린숲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	권선구 효원로266번길 25, 02호(권선동)	031-257-7553	
9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	장안구 천천로74번길 50, 노송관 1층(정자동, 동남보건대학교)	031-546-0514	
10	꿈틀그라운드	영통구 창룡대로 250, 2층 7호(이의동)	031-298-0701	
11	사회복지법인 경기사회봉사회	장안구 경수대로754번길26-17(연무동)	031-255-0923	
12	새품사회적협동조합	장안구 경수대로1022, 6층(파장동)	070-7761-6121	

□ 언어발달지원서비스

<table>
<tr><th>대상 및 지원기준</th><th>신청방법</th><th>문 의</th></tr>
<tr>
<td>
• 대 상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table>
<tr><th>소 득 기 준</th><th>바우처 지원액</th><th>본인부담금</th></tr>
<tr><td>기초수급자(다형)</td><td>월 22만원</td><td>면제</td></tr>
<tr><td>차상위계층(가형)</td><td>월 20만원</td><td>2만원</td></tr>
<tr><td>차상위 초과 ~ 중위소득 65% 이하(나형)</td><td>월 18만원</td><td>4만원</td></tr>
<tr><td>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라형)</td><td>월 16만원</td><td>6만원</td></tr>
</table>
• 지원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청능재활 등 언어발달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td>
<td>
•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신청서 등)→ 자격 및 소득기준 확인(시군구)→ 대상자 결정 및 통지(시군구)
</td>
<td>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td>
</tr>
</table>

□ 발달재활서비스

<table>
<tr><th>대상 및 지원기준</th><th>신청방법</th><th>문 의</th></tr>
<tr>
<td>
• 대 상
-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장애 미등록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table>
<tr><th>소 득 기 준</th><th>바우처 지원액</th><th>본인부담금</th></tr>
<tr><td>기초수급자(다형)</td><td>월 25만원</td><td>면제</td></tr>
<tr><td>차상위계층(가형)</td><td>월 23만원</td><td>2만원</td></tr>
<tr><td>차상위 초과 ~ 중위소득 65% 이하(나형)</td><td>월 21만원</td><td>4만원</td></tr>
<tr><td>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라형)</td><td>월 19만원</td><td>6만원</td></tr>
<tr><td>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마형)</td><td>월 17만원</td><td>8만원</td></tr>
</table>
• 지원내용
언어·청능·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td>
<td>
• 연초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신청서 등)→ 자격 및 소득기준 확인(시군구)→ 대상자 결정 및 통지(시군구)
</td>
<td>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td>
</tr>
</table>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서비스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 의
• **대 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장애 미등록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지원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상담 지원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바우처 지원액 월 16만원,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신청서 등)→ 자격기준 확인 (시군구)→대상자 결정 및 통지 (시군구)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발달재활 · 언어발달 · 부모상담 제공기관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서비스 분야
1	수원 아동발달문화센터	장안구 경수대로 1022, 2층(파장동)	031-253-9098	발달
2	마음뜰clinic 운동발달센터	장안구 대평로 128, 4층 404호 (정자동, 파크프라자)	070-8833-2963	발달
3	김도영언어인지 발달상담센터	장안구 대평로90번길 19, 3층 324호 (정자동, 라이프스포츠 수원)	031-292-3188	발달
4	위드 가족심리지원센터	장안구 서부로 2161, 503호(율전동)	010-6748-2214	발달
5	지혜나무 심리상담센터	장안구 서부로 2197번길 47-1, 3층 (율전동)	031-8004-1909	발달
6	아이숲아동발달센터	장안구 송원로 83, 4층 403호 (조원동, 메가플러스3차)	031-248-5333	발달,언어
7	참사랑 심리학습연구소	장안구 송정로 64, 2층(정자동)	031-246-3339	발달,언어, 부모
8	꿈나무 심리언어연구소	장안구 정조로 988, 212호 (조원동, 조원샤르망)	031-254-4888	발달,언어, 부모
9	동남보건대학교 아동발달지원센터	장안구 천천로 74번길 50, 노송관 1층(정자동)	031-249-6260	발달
10	수원아이 언어심리센터	장안구 화산로125번길 10, 3층 (천천동)	031-297-0701	발달,언어
11	한국아동청소년 발달센터(수원점)	권선구 경수대로 401, 2층 (권선동, KT권선동빌딩)	031-224-7456	발달,언어, 부모
12	하온심리상담센터	권선구 금곡로 205, 409호 (금곡동, 해피라움)	031-227-2248	발달,언어, 부모
13	㈜디디다	권선구 금곡로 206, 301-1/302호 (금곡동, 우성메디피아2차)	031-298-9120	발달,언어
14	한국덴버 아동발달센터	권선구 금곡로 102번길 15, 531/532/533호(금곡동, 비즈윅스)	031-295-3538	발달,언어
15	서수원아동발달센터	권선구 금곡로 102번길 20, 4층 403호(금곡동)	031-227-0707	발달,언어, 부모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서비스 분야
16	루시드심리발달센터	권선구 금곡로197번길 18-39, 7층 701호(금곡동, MS메디컬스퀘어)	010-2765-6620	발달
17	굿컴퍼니	권선구 금호로23번길 21, 슬로피아 1/2/4층(금곡동)	031-291-2171	발달
18	우리아이 통합발달센터 권선점	권선구 동수원로 232, 3층 (권선동, 롯데마트권선점)	031-267-3533	발달
19	마음뜰클리닉(Clinic) 아동청소년발달센터	권선구 동수원로 242번길 6, 502/504호(권선동)	031-225-4023	발달,부모
20	공감심리언어센터	권선구 동수원로 146번길 139, 2층 (곡반정동)	031-232-4023	발달,언어
21	지후아동발달센터	권선구 서부로 1632-6, 201호 (고색동)	031-291-1935	발달,언어, 부모
22	버드내아동발달센터	권선구 세류로 40, 3층(세류동)	031-235-1225	발달,언어
23	㈜일굼부설 행복나무 아동발달센터 수원점	권선구 수인로 296번길 62, 2층 (구운동)	031-892-9114	발달,언어
24	윤슬 아동청소년발달센터	권선구 장다리로 67, 501호 (세류동, 평화빌딩)	070-8263-8275	발달,언어
25	호매실 아동발달심리센터	권선구 호매실로 104번길 24-61, 501/502호(호매실동, 금호프라자)	031-295-8864	발달,언어
26	hdm심리상담센터 사회적협동조합	권선구 호매실로 104번길 90, 307호 (호매실동)	031-292-7553	발달,언어, 부모
27	꿈틀협동조합	권선구 호매실로 104번길 90, 401/403호(호매실동, JD타워)	031-298-0701	발달,언어
28	경기아동 발달센터(수원점)	권선구 효원로 194, 2층 (권선동, 로얄빌리지)	010-9502-6445	발달
29	미쁨아동발달센터	팔달구 덕영대로 697번길 17, 3층 306호(화서동, 그린프라자)	010-5765-0188	발달,언어
30	김희영아동발달센터	팔달구 아주로 9, 601호 (우만동, 용성빌딩)	031-211-9055	발달,언어, 부모
31	화서썬 아동청소년발달센터	팔달구 일월로 22번길 7, 4층(화서동)	031-227-0082	발달,언어
32	라온아동발달센터	팔달구 중부대로 110, 2층 204B/ 205호(인계동, 한라시그마팰리스)	070-8242-7881	발달
33	수원아동발달센터	팔달구 팔달로 53, 2층 214호 (고등동, 고등더퍼스트)	031-241-3599	발달,언어
34	꿈나무 인지언어연구소	팔달구 행궁로 77, 2층 202호 (팔달로3가, 송산빌딩)	031-254-4888	발달,언어, 부모
35	고은소리 음악치료센터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277, 어뮤즈스퀘어 B2층 178호(원천동, 광교중흥에스클래스)	0507-1354-6559	발달
36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영통구 대학2로 41(이의동)	031-212-7255	발달
37	송(Song) 아동발달센터	영통구 도청로 17번길 10, 2층 203호 (이의동, 성희프라자)	031-212-2568	발달,언어
38	광교아동발달센터	영통구 도청로 17번길 18, 402호 (이의동, 광교평은플라자)	031-212-2988	발달,언어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서비스 분야
39	주식회사 꿈자라다(영통점)	영통구 반달로 35번길 30, 344/345/ 346호 (영통동, 영통역 아이파크)	031-204-1442	발달
40	해담심리 언어발달센터 2호점	영통구 반달로 7번길 6, 4층 409/410호 (영통동, 센타프라자)	031-203-1025	발달
41	아이원언어발달센터	영통구 봉영로 1612, 6층 603/606호 (영통동, 보보스프라자)	031-204-3538	발달,부모
42	아이조은 아동상담센터	영통구 봉영로 1767, 401/402호 (영통동, 한솔프라자)	031-203-5275	발달
43	마음샘	영통구 봉영로 1759번길 8-9, 5층 (영통동, 백림빌딩)	031-203-0392	발달,부모
44	이안아동발달연구소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06, 310호 (이의동, 센트럴프라자)	031-213-6644	발달,언어
45	플랜두 아동발달센터	영통구 영통로 237, 110/111호(신동, 에이스 하이엔드타워 영통)	031-202-9989	발달,언어
46	우리아이 통합발달센터	영통구 영통로214번길 17, 4층 (영통동, ASK빌딩)	031-205-5275	발달
47	아주청각언어센터	영통구 월드컵로 185, 304/305호 (원천동)	031-211-4578	발달,언어
48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영통구 창룡대로 255(이의동)	031-548-5614	발달
49	해담심리 언어발달센터	영통구 청명남로 21, 709/710호 (영통동, 아셈프라자)	031-203-1020	발달
50	하나애	영통구 태장로54번길 92, 406호 (망포동, 진성프라자)	031-204-7701	발달,언어
51	행복한우리 심리상담센터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3, 804호(하동)	031-212-9959	부모

□ 장애인아 가족양육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 의
• **대 상** 만 18세 미만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 · 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이용요금**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무료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본인 부담금(시간당 4,870원) 납부 시 이용 가능 • **지원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으로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 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지원시간** - 아동 1명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지원(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월 160시간 이내 원칙	•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신청서 등)→ 자격기준 확인 (시군구)→대상자 결정 및 통지 →이용요금 지원(경기도 및 단체)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table>
<tr><th colspan="3">세 부 사 업</th><th>문 의</th></tr>
<tr><td>구분</td><td>지원대상 및 내용</td><td>신청방법</td><td rowspan="4">•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td></tr>
<tr><td>국비 사업</td><td>• 대 상
- 장애유형 :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교부품목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평가표에 따른 42종 품목
- 교부기준 :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
- 지원주기 : 각 품목별 내구연한 확인
※ 당해연도에 국비 또는 도비 보조기기 1개 품목만 신청 가능</td><td>•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신청서 등)→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맞춤형 상담 및 평가 (재활공학센터)→보조 기기교부(업체)→교부 확인 및 비용지급(시군구)</td></tr>
<tr><td>도비 사업</td><td>• 대 상
- 장애유형 :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3인기준 4,020천원)
• 지원내용
- 교부품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품목과 국비 교부 품목 제외한 보조기기
- 교부기준 : 연간 지원기준액 15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1품목 지원
- 지원주기 : 2년(격년으로 지원)
※ 당해연도에 국비 또는 도비 보조기기 1개 품목만 신청 가능</td><td>•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신청서 등)→ 맞춤형 상담 및 평가 (재활공학센터)→보조 기기교부(업체)→교부 확인 및 비용지급(시군구)</td></tr>
<tr><td>시비 사업</td><td>• 대 상
- 장애유형 :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수급자 · 차상위계층 및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기준 5,025천원)
• 지원내용
- 수리품목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 지원 품목은 제외)
- 지원기준
<table>
<tr><th>지원대상</th><th>지원금액</th><th>지원횟수</th></tr>
<tr><td>수급자 및 차상위계층</td><td>20만원</td><td>1회
(긴급사유 해당 시, 1회 추가)</td></tr>
<tr><td>중위소득 100% 이하</td><td>10만원</td><td>1회</td></tr>
</table>
※ 긴급사유란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장애가 있는 단독가구의 경우
※ 지원대상자 경합 시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장애인</td><td>•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신청서 등)→ 자격 및 소득기준 확인 및 적격여부 통지(시군구)→보조 기기 수리(업체)→수리 확인 및 비용지급(시군구)</td></tr>
</table>

○ 보조기기 수리업체

연번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지정기간
1	대길케어	장안구 월드컵로 423(연무동)	031-252-9337	2023. 1. ~ 2025. 12.
2	부르미	권선구 서호로 135-10, 102호(서둔동)	010-6344-3600	
3	천수기업	권선구 정조로 195번길 10-14, 1층 (권선동)	010-3586-4081	
4	에이원케어 메디칼	권선구 일월천로 15번길 14-13(구운동)	031-278-8275	
5	일신케어	권선구 구운로 45번길 27(구운동)	010-3534-9337	
6	자립원	팔달구 세지로 399번길 94-2(우만동)	010-6755-8855	
7	㈜힐링산업	팔달구 정조로 781, 3103호(팔달로 2가)	031-216-8661	
8	㈜수원보장구 수리센터	팔달구 창룡대로 210번길 13,104호 (우만동, 우만주공상가)	031-231-2000	
9	스위티즈	영통구 삼성로 253, 1동 1423호 (원천동, 영통지식산업센터)	010-5152-5322	

□ 장애인 일자리 지원

<table>
<tr><th>대상 및 지원기준</th><th>신청방법</th><th>문 의</th></tr>
<tr>
<td>

• **대 상**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 신청 제한 대상자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65세 이상자 중 3년간 연속참여자는 선발 배점 총점의 5%이상 감점
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등급외 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⑧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사람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 **지원내용**
일자리 유형 및 참여자 수, 근로조건 등 /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계
(명)</th><th colspan="2">일반형 일자리(시 직영)</th><th colspan="2">복지 일자리</th><th>특화형
일자리
(위탁)</th></tr>
<tr><th>전일제</th><th>시간제</th><th>참여형
(위탁)</th><th>연계형
(시 직영)</th></tr>
<tr><td>참여
자수</td><td>285</td><td>78</td><td>40</td><td>135</td><td>30</td><td>2</td></tr>
<tr><td>주요
사업</td><td></td><td colspan="2">행정도우미, 사서보조,
카페보조,
환경정리 등</td><td colspan="2">급식지원, 문화예술,
단순업무지원 등</td><td>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식사지원,
말벗 등)</td></tr>
<tr><td>근로
조건</td><td></td><td>주 5일
40시간,
2,096,270원</td><td>주 5일
20시간,
1,048,140원</td><td colspan="2">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561,680원</td><td>주 5일
25시간,
1,291,
660원</td></tr>
</table>

</td>
<td>

• 전년도 11~12월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수행기관 신청

</td>
<td>

• 장애인일자리 상담안내
(☎228-2217)

</td>
</tr>
</table>

○ 장애인 복지일자리 수행기관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고
1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	권선구 호매실로 211 (호매실동)	031-257-3577	참여형
2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영통구 창룡대로 255 (이의동)	031-548-5699	
3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권선구 호매실로 211 (호매실동)	031-893-2172	
4	다드림사회적일자리 교육센터	권선구 호매실로 90번길 24 프리마비즈타워 503 (호매실동)	010-8289-3544	
5	경기도장애인부모연대 수원시지부	팔달구 덕영대로697번길 7, 414호(화서동)	031-241-0101	특화형

□ 장애인복지관 운영

대상 및 주요사업	이용방법	문 의
• **장애인복지관** : **2개소** • **이 용 대 상** : **수원시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 **서비스 내용** -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 연중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관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 고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영통구 창룡대로 255 (이의동)	031-548-5600	
호매실 장애인종합복지관	권선구 호매실로 211 (호매실동)	031-893-2177	

□ 새빛이음(수원특례시 발달장애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대상 및 주요사업	이용방법	문 의
•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 **수원특례시 발달장애 종합정보시스템 "새빛이음" 운영** **※ https://www.suwon.go.kr:22861/** • **이 용 대 상** : **수원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등** • **서비스 내용** **발달장애 정보** (**발달지연**) 발달정의 및 보육·교육 (**자녀설계**) 연령별 과업, 평생설계 **복지 서비스** (**생애주기별**) 영유아기~ 노년기 (**영역별**) 생활··여가·건강 등 **복지시설 검색** 사회복지 시설, 바우처 제공기관, 기타 기관·단체 (고용·교육·보육 등) **소식 알림** 행사알림*, 공지사항, 자료실 등 (* 시설의 주요 행사 및 모집일정 알림)	• 인터넷 접속 → "새빛이음" 검색	• 장애인복지과

여성 및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서비스 제공

□ 한부모(조손)가족 자립 지원

<table>
<tr><th>대상 및 지원기준</th><th>신청방법</th><th>문 의</th></tr>
<tr>
<td>
• 대 상
- 근로능력 여부 ·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가구
· 한부모가족 :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한부모가족 포함, 18세 미만 자녀(취학시 22세미만)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18세 미만 손자녀(취학 시 22세미만)
· 청소년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
• 보장절차 : 처리기한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신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등 가능)
-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계약서, 소득 • 재산 확인서류, 지출실태 확인서 등
- 조사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확정, 소득·재산신고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급여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급여 제공
• 확인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확인조사 등 통해 급여변경 및 급여중지 등 결정
•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 초과 시 급여중지(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 징수)
• 선정기준 (단위 : 원)
<table>
<tr><th>구 분</th><th>2인</th><th>3인</th><th>4인</th><th>5인</th></tr>
<tr><td>'25년 기준 중위소득</td><td>3,932,658</td><td>5,025,353</td><td>6,097,773</td><td>7,108,192</td></tr>
<tr><td>한부모 및 조손(중위 63%)</td><td>2,477,575</td><td>3,165,972</td><td>3,841,597</td><td>4,478,161</td></tr>
<tr><td>청소년한부모(중위 65%)</td><td>2,556,228</td><td>3,266,479</td><td>3,963,552</td><td>4,620,325</td></tr>
<tr><td>청소년한부모증명(중위 72%)</td><td>2,831,514</td><td>3,618,254</td><td>4,390,397</td><td>5,117,898</td></tr>
</table>
</td>
<td>
•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신분증 등)
및 초기상담
→
구청
(사회복지과)
소득 및 재산 조사
(보장결정 요청)
→
구청
(가정복지과)
보장결정 및 통지, 지원 등
→
구청
(가정복지과)
지원 등
</td>
<td>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td>
</tr>
</table>

<table>
<tr><th colspan="4">대상 및 지원기준</th><th>신청방법</th><th>문 의</th></tr>
<tr><td colspan="4">• 지원내용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지 원 대 상</th><th>지 원 액</th></tr>
<tr><td rowspan="9">한부모(국.도비)</td><td>아동양육비</td><td colspan="2">• 만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td><td>자녀 1인당
월 23만원</td></tr>
<tr><td rowspan="3">추가
아동양육비</td><td colspan="2">•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만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td><td>자녀 1인당
월 5만원</td></tr>
<tr><td rowspan="2">만25세이상 만34세 이하 한부모가족</td><td>만5세이하 자녀</td><td>자녀 1인당
월 10만원</td></tr>
<tr><td>만6세이상 만18세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td><td>자녀 1인당
월 5만원</td></tr>
<tr><td>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국비)</td><td colspan="2">• 초·중·고등학생에 재학중인 자녀</td><td>자녀 1인당
93,000원
연 1회(7월)</td></tr>
<tr><td>학습재료비
(도비)</td><td colspan="2">•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td><td>월 15천원/인</td></tr>
<tr><td>생필품비</td><td colspan="2">• 저소득 한부모가족 全 가정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td><td>1회당 6만원/세대
연 2회(설날, 추석)</td></tr>
<tr><td>교육비</td><td colspan="2">• 무상교육 예외대상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td><td>교육부 지침
(실비 지원)</td></tr>
<tr><td>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td><td colspan="2">• 저소득 조손가족 중·고등학생 손자녀</td><td>월 10만원/인
※ 아동양육비(국비) 대상자 제외</td></tr>
<tr><td>조손가족
손자녀
입학금</td><td colspan="2">• 저소득 조손가족 중 국내 대학 신입생
※ 2025년도 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 지원
(국가장학금 중복지원 제외한 차액 지원)</td><td>500만원 내
(1회, 실비지원)</td></tr>
<tr><td>조손가족
손자녀대학
입학준비금</td><td colspan="2">• 저소득 조손가족 중 국내 대학 신입생
※ 대학생활에 필요한 과비, 태블릿pc, 교재비 등 지원</td><td>250만원 내
(1회, 실비지원)</td></tr>
<tr><td rowspan="3">청소년한부모(국비)</td><td>아동양육비</td><td colspan="2">• 청소년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의 아동</td><td>월 40만원(0~1세영아)/인
월 37만원(2세이상)/인
(※ 단,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대상은 월 17만원 또는 14만원/인)</td></tr>
<tr><td>검정고시
학습지원</td><td colspan="2">• 학업이 단절된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td><td>연 154만원 이내</td></tr>
<tr><td>자립
촉진수당</td><td colspan="2">• 자립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td><td>월 10만원/가구</td></tr>
</table></td><td>•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신분증 등)
및 초기상담
→
구청
(사회복지과)
소득 및 재산 조사
(보장결정 요청)
→
구청
(가정복지과)
보장결정 및 통지, 지원 등
→
구청
(가정복지과)
지원 등</td><td>•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td></tr>
</table>

□ 출산장려 및 입양문화 정착 지원

<table>
<tr><th>대상 및 지원기준</th><th>문 의</th></tr>
<tr><td>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table>
<tr><th>구 분</th><th>지 원 대 상</th><th>지 원 액</th></tr>
<tr><td>첫만남이용권</td><td>·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원칙</td><td>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td></tr>
<tr><td>출산지원금</td><td>· 둘째 이후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180일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경우</td><td>둘째아 5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td></tr>
<tr><td>아동수당</td><td>· 만 0~8세(0~95개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td><td>1인당 월 10만원
(현금 지급)
※ 매월 25일</td></tr>
<tr><td>입양지원금</td><td>· 첫째자녀 이상 자녀의 입양일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180일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입양신고를 한 경우</td><td>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 800만원
※ 기존의 자녀 수에 입양 자녀를 포함</td></tr>
<tr><td>입양아동
양육수당</td><td>· 입양기관을 통해 자녀 입양한 가정
(아동이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td><td>월 20만원/1인</td></tr>
<tr><td>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td><td>· 기준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부와 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td><td>월 25만원/1인</td></tr>
<tr><td>둘째자녀 이상
한약 할인지원</td><td>· 출산일 1개월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 자녀이상 출산 여성</td><td>20만원 이상 산후조리 한약 조제 시 10만원 할인
(차액 본인 부담)</td></tr>
<tr><td>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td><td>· 신생아의 부(夫)가 장애인으로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또는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후 계속하여 수원시 거주한 자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청 장애인복지과에서 지급)</td><td>신생아 1인 기준
100만원</td></tr>
<tr><td>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td><td>· 신생아의 모(母)가 등록 장애인으로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임신 4개월 이상)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청 장애인복지과에서 지급)</td><td>출산 시 태아 1인기준
120만원</td></tr>
</table>

• **구비서류** : 신청서 등

</td><td>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td></tr>
</table>

□ 가족여성회관 운영

대상 및 주요사업	이용방법	문 의
• **이 용 대 상** : 관내 여성 • **서비스 내용** - 사회재참여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 교육 운영, 양성 평등 문화 확산(교육 및 캠페인) - 가족의 가치 재발견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역기관 연대사업 등	• 연중	• 가족여성회관

○ 가족여성회관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 고
수원시가족여성회관	팔달구 매산로 119(교동)	031-259-9800	

□ 여성문화공간-휴 운영

대상 및 주요사업	이용방법	문 의
• **이 용 대 상** : 관내 여성 • **서비스 내용** - 여성의 건강 · 문화 · 교육 · 공동체 활동 · 심신상담 등을 위한 힐링 공간으로 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운영	• 연중	• 여성문화공간-휴

○ 여성문화공간-휴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 고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권선구 동수원로 224번길 10 (권선동)	031-225-2541	

아이행복, 부모행복 안심보육(돌봄)서비스 제공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table>
<tr><th>대상 및 지원기준</th><th>신청방법</th><th>문 의</th></tr>
<tr>
<td>

• **대 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아동 /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등
• **보장절차 : 처리기한 30일 이내(불가피한 경우 60일)**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온라인 신청은 부모에 한함)**
-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해당 영유아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 **조사** : 24개월 미만 전 아동 요건 충족 여부 조사 실시
- **결정** :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급여** :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급여 제공 (보육료 및 종일제 아이돌봄 차감 지급)**
※ 현금 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 지급)

• **지원내용**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부모급여(현급)</th><th colspan="2">부모급여(바우처)</th></tr>
<tr><th>부모보육료</th><th>종일제 아이돌봄</th></tr>
<tr><td>0세(0세반)</td><td>100만원</td><td>54만원</td><td rowspan="2">시간당 12,180원
(최소 80시간,
최대200시간 지원)</td></tr>
<tr><td>1세(0세반)
(1세반)</td><td>50만원</td><td>54만원
47만5천원</td></tr>
</table>

</td>
<td>•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신분증 등) 및 초기상담
→
구청 (가정복지과) 보장결정 및 통지
→
구청 (가정복지과) 급여지급</td>
<td>•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td>
</tr>
</table>

□ 가정양육수당(장애아양육수당 포함) 지원

<table>
<tr><th>대상 및 지원기준</th><th>신청방법</th><th>문 의</th></tr>
<tr>
<td>

• **대 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
• **보장절차 : 처리기한 14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6일이내 연장 가능)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온라인 신청은 부모에 한함)
-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해당 영유아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 **조사** : 양육수당 지원 자격 조사 실시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받는 아동은 양육수당 중복 지원 불가
- **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급여** :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급여 제공(가정양육수당 또는 장애아양육수당)**
※ 현금 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 지급)

• **지원내용**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지 원 기 준</th><th>지원방법 및 지원시기</th></tr>
<tr><td rowspan="2">양육수당</td><td>가정양육수당
※ 아동출생 후 60일이내 신청
※ 출국 후 90일이 되는 날 다음날 자격 정지</td><td>•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미취학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
-24~85개월 : 10만원</td><td rowspan="2">매월 25일</td></tr>
<tr><td>장애아양육수당</td><td>-24~35개월미만 : 20만원
-36~85개월 : 10만원</td></tr>
</table>

</td>
<td>•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신분증 등) 및 초기상담
→
구청 (가정복지과) 보장결정 및 통지
→
구청 (가정복지과) 급여지급</td>
<td>•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td>
</tr>
</table>

□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경비 지원

<table>
<tr><th>대상 및 지원기준</th><th>신청방법</th><th>문 의</th></tr>
<tr>
<td>

• **대 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0~5세 영유아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 이용
(단, 장애아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보장절차 : 처리기한 14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6일이내 연장 가능)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온라인 신청은 부모에 한함)
-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종일형 자격 사유별 제출서류(보육료 신청자에 한함)**
- **조사** : 2013년부터 전(全)계층 무상보육 실시로 소득 · 재산 조사 불필요하나, 2016.07.01.자 맞춤형보육(영아0~2세/20.3월부터 기본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연장보육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연장보육 자격 여부 확인조사 실시
- **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급여** :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급여 제공 (보육료, 다문화, 장애아, 유아학비, 기본보육료 등)**

• **지원내용**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지 원 기 준</th><th>지원 방법 등</th></tr>
<tr><td rowspan="8">보육료</td><td>만0세~5세보육료 (다문화보육료-'17.1.1이후 출생 포함)</td><td>· 0세('24.1.1이후 출생) : 540천원
· 1세('23.1.1~'23.12.31) : 475천원
· 2세('22.1.1~'22.12.31) : 394천원
· 3세~5세('21.1.1~'19.12.31)
/ 취학유예 아동인 경우 '18.1.1~'18.12.31) : 280천원</td><td rowspan="5">매월 (아이행복카드 결재)</td></tr>
<tr><td>장애아 보육료</td><td>· 장애아반 편성된 아동 : 587천원
· 12세('12.1.1이후 출생)의 장애 아동
※ 장애인등록자 / 장애인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5세)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 통지서(8세이하) 중 1부</td></tr>
<tr><td>야간연장 보육료 (19:30~24:00)</td><td>· 일반아동 : 시간당 4,000원, 월 최대 60시간(한도액 24만원)
· 장애아동 : 시간당 5,000원, 월 최대 60시간(한도액 30만원)</td></tr>
<tr><td>방과후 보육료</td><td>· 12세('12.1.1이후 출생)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중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 아동으로 방과 후 어린이집 이용(1일 4시간 이상) 시
- 일반아동 10만원 - 장애아동 293,000원</td></tr>
<tr><td>누리차액 보육료</td><td>· 민간 3세 : 월 128천원 · 민간 4,5세 : 월 105천원
· 가정 3~5세 : 월 131천원</td></tr>
<tr><td>유아학비 시간연장보육료</td><td>· 유치원 아동 중 어린이집 시간연장 이용 아동
시간당 4,000원, 월 최대 60시간</td><td>매월 25일</td></tr>
<tr><td>기관 보육료 (만0세~2세)
※ 원에서 매월 말일까지 전월 이용현황 확정
→원에서 매달 3일까지 생성내역 확인 후 신청
→시군구 지급승인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지급</td><td>·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원으로 지원 요건(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등) 충족 시 지원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 일할계산 / 월 1일이상 출석할 경우 전액 지원 / 출석일수 0일인 경우 미지원)
0세('24.1.1이후 출생) : 629천원
1세('23.1.1~'23.12.31) : 342천원
2세('22.1.1~'22.12.31) : 232천원 장애아 : 686천원</td><td>매월 11일 경</td></tr>
<tr><td colspan="2">보육경비지원(입소료 등)
※법정저소득아동,장애아동, 다문화아동</td><td>· 입학준비금(원복, 체육복, 가방 등) : 100천원
· 현장학습비(수련회비, 견학비 등) : 100천원</td><td>연1회</td></tr>
</table>

</td>
<td>•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신분증 등) 및 초기상담
→
구청 (가정복지과) 보장결정 및 통지
→
구청 (가정복지과) 급여지급</td>
<td>•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td>
</tr>
</table>

□ 가정위탁아동 선정 및 지원

<table>
<tr><th>대상 및 지원기준</th><th>신청방법</th><th>문 의</th></tr>
<tr>
<td>
• 대 상
- 보호 대상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 보호 연장 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결혼, 취업, 독립 등의 사유와 무관)
• 구비서류 : 신청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조회 동의서, 가정위탁보호(가족) 동의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 특수상병기록 포함) 등
• 가정위탁 유형
- 일반위탁 :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
※ '21.6.30. 이전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결정된 자는 일반가정위탁으로 간주
- 전문위탁 :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
- 일시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
• 가정위탁 선정기준 :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일반위탁가정)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시청) 및 보호 결정(구청)
-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적절한 양육 및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이고 아동과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
-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지원내용
<table>
<tr><th>구 분</th><th>지 원 대 상</th><th>지 원 액</th></tr>
<tr><td>양육
보조금</td><td>·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또는 만18세 이후 연장보호가 결정된 아동</td><td>월 45만원/인
※ 2025.1.1.부터 45만원</td></tr>
<tr><td>아동용품
구입비</td><td>· 신규 책정된 가정위탁 아동
※ 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 물품 구입비용 지원</td><td>양육보조금 지급 개시 시 100만원 지급(1회)</td></tr>
<tr><td>특별
위로비</td><td>· 가정위탁 아동 전체</td><td>1회당 4만원/인 (연 4회)
※ 설, 추석, 어린이날, 연말</td></tr>
<tr><td>학습
재료비</td><td>· 초·중·고등학교 재학생(학교밖 청소년 포함)
※ 학습활동을 위한 문구, 학습지 등 구매비용 지원</td><td>월 2만원/인</td></tr>
<tr><td>교육
보호비</td><td>· 만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중 교과목 외 학원비(방문학습지, 체육시설업 교습비, 참고서비 포함)</td><td>월 20만원이내/인(실비)
※ 참고서비 차등지원
(초등 연20, 중등 연30, 고등 연 50천원)</td></tr>
<tr><td>체험
학습비</td><td>·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체험학습 참가자</td><td>14만원/인(실비) 한도 내 지원, 횟수제한 없음</td></tr>
<tr><td>대학
준비금</td><td>· 대학입학년도 기준 도내 거주중인 가정위탁아동</td><td>(입학생) 250만원(정액지급)</td></tr>
<tr><td>특별
학습비</td><td>· 방학기간 중 학원등록자 (중·고등학생)</td><td>중학생 16만원, 고등학생 20만원
※ 여름·겨울방학 기간 중 연 2회 지원</td></tr>
</table>
</td>
<td>
•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신분증 등) 및 초기상담 위탁가정 환경조사 등
※ 경기남부가정위탁센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031-234-3980)
→
시청 (아동돌봄과)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
구청 (가정복지과) 아동의 보호결정 및 지원
</td>
<td>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td>
</tr>
</table>

□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 대 상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
  -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기본형 / 종합형 구분)
  -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의 아동
  - · **기관 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0세~12세 아동

• 기본 이용시간

- 공통사항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 영아종일제서비스 : 1회 3시간 이상
- 시간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서비스 : 1회 2시간 이상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 지원율 적용

▶ 일반가정

· **영아종일제서비스**

소득유형	소득기준 (4인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계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4,574,000원)	12,180원	10,354원	**1,826원**
나형	75%초과 120%이하(7,318,000원)	12,180원	7,308원	**4,872원**
다형	120%초과 150%이하(9,147,000원)	12,180원	3,654원	**8,526원**
라형	150%초과 200%이하(12,196,000원)	12,180원	1,828원	**10,352원**
마형	200%초과	12,180원	-	**12,180원**

· **시간제서비스(기본형)**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 비용	A형('18.1.1~출생)		B형('17.12.31~이전)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12,180원	10,354원	**1,826원**	9,136원	**3,044원**
나형	75%초과 120%이하	12,180원	7,308원	**4,872원**	4,872원	**7,308원**
다형	120%초과 150%이하	12,180원	3,654원	**8,526원**	2,436원	**9,744원**
라형	150%초과 200%이하	12,180원	1,828원	**10,352원**	1,218원	**10,962원**
마형	200%초과	12,180원	-	**12,180원**	-	**12,180원**

· **시간제서비스(종합형)**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 비용	A형('18.1.1~출생)		B형('17.12.31~이전)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15,830원	10,354원	**5,476원**	9,136원	**6,694원**
나형	75%초과 120%이하	15,830원	7,308원	**8,522원**	4,872원	**10,958원**
다형	120%초과 150%이하	15,830원	3,654원	**12,176원**	2,436원	**13,394원**
라형	150%초과 200%이하	15,830원	1,828원	**14,002원**	1,218원	**14,612원**
마형	200%초과	15,830원	-	**15,830원**	-	**15,830원**

·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 비용	A형('18.1.1~출생)		B형('17.12.31~이전)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14,610원	12,420원	**2,190원**	10,958원	**3,652원**
나형	75%초과 120%이하	14,610원	8,766원	**5,844원**	7,305원	**7,305원**
다형	120%초과 150%이하	14,610원	7,305원	**7,305원**	7,305원	**7,305원**
라형	150%초과 200%이하	14,610원	7,305원	**7,305원**	7,305원	**7,305원**
마형	200%초과	14,610원	7,305원	**7,305원**	7,305원	**7,305원**

- 연중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및 소득조사 및 등급 결정)
  →
  구청 (가정복지과) 지원 유형 최종 결정 및 통지
  →
  시청 (가족정책과) 서비스제공기관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관리
  →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연계 및 서비스 제공

대상 및 지원기준	문 의

▶ **한부모(조손가족 포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 **영아종일제서비스**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계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4,574,000원)	12,180원	10,962원	**1,218원**
나형	75%초과 120%이하(7,318,000원)	12,180원	7,308원	**4,872원**
다형	120%초과 150%이하(9,147,000원)	12,180원	3,654원	**8,526원**
라형	150%초과 200%이하(12,196,000원)	12,180원	1,828원	**10,352원**
마형	200%초과	12,180원	-	**12,180원**

· **시간제서비스(기본형)**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 비용	A형('18.1.1~출생)		B형('17.12.31~이전)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12,180원	10,962원	**1,218원**	9,744원	**2,436원**
나형	75%초과 120%이하	12,180원	7,308원	**4,872원**	4,872원	**7,308원**
다형	120%초과 150%이하	12,180원	3,654원	**8,526원**	2,436원	**9,744원**
라형	150%초과 200%이하	12,180원	1,828원	**10,352원**	1,218원	**10,962원**
마형	200%초과	12,180원	-	**12,180원**	-	**12,180원**

· **시간제서비스(종합형)**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 비용	A형('18.1.1~출생)		B형('17.12.31~이전)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15,830원	10,962원	**4,868원**	9,744원	**6,086원**
나형	75%초과 120%이하	15,830원	7,308원	**8,522원**	4,872원	**10,958원**
다형	120%초과 150%이하	15,830원	3,654원	**12,176원**	2,436원	**13,394원**
라형	150%초과 200%이하	15,830원	1,828원	**14,002원**	1,218원	**14,612원**
마형	200%초과	15,830원	-	**15,830원**	-	**15,830원**

·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 비용	A형('18.1.1~출생)		B형('17.12.31~이전)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14,610원	13,150원	**1,460원**	11,688원	**2,922원**
나형	75%초과 120%이하	14,610원	8,766원	**5,844원**	7,305원	**7,305원**
다형	120%초과 150%이하	14,610원	7,305원	**7,305원**	7,305원	**7,305원**
라형	150%초과 200%이하	14,610원	7,305원	**7,305원**	7,305원	**7,305원**
마형	200%초과	14,610원	7,305원	**7,305원**	7,305원	**7,305원**

▶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24세이하) 0~1세 자녀 양육 가구**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시간제(기본형)		시간제(종합형)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10,962원	**1,218원**	10,962원	**4,868원**	13,150원	**1,460원**
나형	75%초과 120%이하						
다형	120%초과 150%이하						
라형	150%초과 200%이하						
마형	200%초과	-	**12,180원**	-	**15,830원**	7,305원	**7,305원**

- 가구유형 판단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장기요양 보험료 제외)으로 월평균 가구 소득금액 산정

• **구비서류** : 신청서 등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대상 및 주요사업	이용방법	문 의
• **이 용 대 상** : 관내 시민 • **서비스 내용** -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서비스 제공 (가족상담·교육·문화사업 등 가족기능 강화사업 추진)	• 연중	• 건강가정지원센터

○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 고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팔달구 향교로 161 601~602호 (중동, 우림빌딩)	031-245-1310 031-245-1311	

□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교돌봄터사업 운영

대상 및 지원기준	문 의
○ **다함께돌봄센터** • **대 상** 돌봄이 필요한 6세~12세 아동(초등학생) / 소득수준 무관 • **운영시간 및 주요내용** - **관내 21개소 운영** **※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의무화** **- '21.1.12일 이후에 사업계획의 승인(공동주택건축허가)**을 신청한 **공동주택부터 적용** - 월~금(학기중 11시~20시, 방학중 9시~20시) - 이 용 료 : 없음(단, 급·간식비 이용자 부담) - 주요내용 ▶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간식 제공, 방과 후 상시 및 일시 돌봄 ▶ 숙제지도 및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제공 - 시설면적 ▶ 최소 66㎡이상 전용면적(아동 1인당 3.3㎡이상, 20명 확보) - 인력구성 ▶ 3명(센터장1, 돌봄교사1, 시간제교사1) • **구비서류** : 신청서 등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청 아동돌봄과 (☏228-2960 2869 2303)
○ **학교돌봄터사업** • **대 상** 돌봄이 필요한 6세~12세 아동(초등학생) / 소득수준 무관 • **운영시간 및 주요내용** - **관내 1개소(3개 교실) 운영**	

시 설 명	소 재 지	면적(㎡)	정원(명)	전화번호	비고
수원시-수원초 다함께학교돌봄터	팔달구 팔달로110번길 26 (고등동, 수원초등학교)	194	57	548-4979	

- 월~금(학기중 10시~20시, 방학중 9시~20시)
- 이 용 료 : 없음(단, 급·간식비 이용자 부담)
- 주요내용 : 정기, 일시돌봄, 급·간식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등의 프로그램 제공
- 시설면적 : 1교실당 면적 64.8㎡
- 인력구성 : 7명[센터장 1, (8시간)돌봄교사 3, (6시간)돌봄교사 3]

• **구비서류** : 신청서 등

□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대상 및 주요사업	이용방법	문 의
• **이 용 대 상** : 만 0세~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등) • **서비스 내용** - 건강·보육(교육)·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상담, 사례회의, 건강검진, 영양교육, 아동권리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건강프로그램, 구강교육, 심리감사, 정신건강 서비스, 의료지원 연계, 기초학습 지원, 영·유아 인지발달 프로그램, 경제교육, 독서지도,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진로지도, 멘토링 프로그램, 부모교육, 가족상담 및 치료 등	• 연중	• 드림스타트센터

○ 드림스타트센터 현황

(단위 : 명)

시 설 명	소 재 지	인력	대상지역	전화번호	비고
수원시 드림스타트 (영화센터)	장안구 장안로 54, 2층 (영화동, 칠공빌딩)	4	장안구 권선구	228-4615 4616	
수원시 드림스타트 (세류센터)	권선구 덕영대로 1129, 2층 (세류2동)	4	권선구 영통구	228-4621 4624	
수원시 드림스타트 (우만센터)	팔달구 세지로 406, 2층 (우만1동)	4	팔달구 장안구	228-3916 3918	

□ 결식아동 급식 지원

<table>
<tr><th>대상 및 지원기준</th><th>신청방법</th><th>문 의</th></tr>
<tr>
<td>
• 대 상
- 결식 우려가 있는 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 · 긴급복지지원 등의 아동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범위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자활급여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 상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받는 자 · 만성질환자 · 18세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 경감받는 자,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받는 자
-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가정 소득 및 가정환경 등 자격조사 서류 등
• 지원내용
- 미취학아동 : 조, 중, 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지원
- 취 학 아 동 : 조, 석식 연중 지원(지자체)
중식 지원(학기중 → 교육청, 방학중 → 지자체)
<table>
<tr><th>구 분</th><th>지 원 대 상</th><th>지 원 액</th></tr>
<tr><td>지역
아동센터</td><td>• 지역아동센터 시설 입소 아동
⇒ 교육급여대상 가정아동,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아동,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가정 아동, 장애인가정아동, 조손가정 아동, 다자녀가정 아동 등</td><td rowspan="2">1식 /
9,500원
※ 25. 1. 1. 9,000원→ 9,500원으로 인상</td></tr>
<tr><td>급식
전자카드
(G-dream
카드)</td><td>•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소년소녀가정아동,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아동, 긴급복지지원대상 아동, 보호자의 부재·양육능력 미약, 장애인·맞벌이가정 아동(중위소득 52%*이하) 등
*4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3,170,842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113,314원 지역가입자 38,332원</td></tr>
<tr><td>학교
급식소</td><td>• 결식 우려가 있는 중·고등학교 재학생</td><td>학교급식비
(학기 중 석식, 방학 중 중식)</td></tr>
</table>
- 급식 전달방법 : 지역아동센터, 일반음식점, 학교
</td>
<td>•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신분증 등) 및 초기상담 신청자격 등 조사
→
구청
(가정복지과) 동별 취합 후 및 심의 의뢰
→
시청
(아동돌봄과) 결정 및 통지
→
구청
(가정복지과) 급식 실시 등</td>
<td>•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td>
</tr>
</table>

수원에서 같이, 1인가구 함께(WITH)

□ 1인가구 지원사업

대상 및 주요사업	문 의
•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 수원시 1인가구 온라인 플랫폼 "쏘옥" 운영** - 운영기간 : 2024. 1. 8. ~ 지속 - **쏘옥(수원시 1인가구 포털) https://www.suwon.go.kr/web/1insuwon/index.do** - 주요내용 : 1인가구 맞춤형 정보 및 비대면 소통 공간 제공 - **포털구성** **1인가구 정책** : - 1인 가구 정책 비전 및 목표 제시 **사업안내** : - 사업 안내 및 참여 링크 연결 **소통공간** : - 소통공간 공지사항 포토갤러리 **기관안내** : - 1인가구 지원사업 유관 기관 소개 • **1인가구 시민참여단 "쏘옥패밀리" 운영** - 모집기간 : 2024. 3. 20.(수) ~ 지속 - 지원자격 : 1인가구 또는 1인가구 지원에 관심있는 수원 시민 ※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수원시 실제 활동 및 거주 시민 포함 - 활동내용 : 1인 가구 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분과별 활동 등 - 활동혜택 ▶ 주관행사 우대 및 자원봉사 인정 ▶ 1인가구 정책 얼리버드 : 1인가구 대상 사업안내 SMS 매주 발송 ▶ 관심 주제 소모임 결성 및 운영 지원 ▶ 모임 공간 지원 및 음료 10% 할인(조스테이블 광교점) - 신청방법 : 새빛톡톡 및 방문 접수 • **4구4색 1인가구 거점 지원 사업** - 추진기간 : 연중 - 추진장소 : 장안구(수원시노동자종합복지관), 권선구(수원유스호스텔) 팔달구(수원시가족여성회관), 영통구(아이에이엠센터) - 추진내용 ▶ (장안) 쿠킹클래스 참여자가 2인분을 요리하고, 1인분은 독거노인에게 전달 ▶ (권선) 원데이클래스를 통한 1인가구 여가 활동 지원 ▶ (팔달) 노년층을 위한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교육 ▶ (영통) 핸드드립 실습 및 심리상담 • **1인가구 지원사업(도비)** - 추진기간 : 연중 - 추진내용 ▶ (생활꿀팁 바구니) 정리수납 교육을 통한 효율적인 생활공간 조성 지원 ▶ (식생활 개선 다이닝) 1인가구 식생활 개선 및 공동체형성 요리교실 ▶ (건강돌봄 프로그램) 불면증 개선, 등산 등 연령대별 맞춤형 건강 지원 프로그램 ▶ (금융안전교육)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및 개인 재무상담 - 수행기관 :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수원시 가족정책과 (☏228-3706)

청소년 보호 및 사회안전망 구축

□ 청소년증 발급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 의
• **발급대상** - 9세 이상 ~ 18세 이하의 청소년(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 청소년복지 지원법 : 9세 이상 ~ - **법률적 청소년 기준**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신 청**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신규발급과 재발급 모두,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신청** - **무료**(단, **등기수령 선택 시 등기우송료 3,820원**은 **신청인 부담**) - **청소년증**은 **기본형(비교통), 확대형(교통) 중 선택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사진(3.5㎝X4.5㎝), 선불형 교통카드 등** ※ 신청서 작성 당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추후에 별도로 교통카드 기능만 추가하는 것은 불가함 • **청소년증 사용범위** -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 -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혜택 -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 가능	•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신분증 등) 및 초기상담 신청자격 등 확인 전송 → 한국조폐공사 (청소년증 제작-3주 소요) → 구청 (가정복지과) 청소년증 발급(배부)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위기청소년 복지지원체계 강화 프로그램 운영

<table>
<tr><th colspan="2">세 부 사 업</th><th>문 의</th></tr>
<tr><td colspan="2">• 지원사업
<table><tr><th>구 분</th><th>지원대상 및 내용</th></tr><tr><td>시군 청소년 안전망 사업</td><td>[대 상]
・관내 고위기 청소년(9세~24세)
[주요사업]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및 위기개입, 사례관리(위기 현황 파악 및 지원방안 모색)
・1388청소년지원단, 학교지원단, 필수연계기관 및 유관기관 대외협력
[수행기관]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212-1318)</td></tr><tr><td>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td><td>[대 상]
・관내 고위기 청소년(9세~24세)
[주요사업]
・찾아가는 상담 및 지원 서비스(심리상담, 필요서비스 연계)
・사회성, 자존감 향상을 위해 문화체험, 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동반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수행기관]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236-1318)</td></tr><tr><td>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td><td>[대 상]
・고립·은둔 위기군 청소년(9세~19세)
[주요사업]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방문 상담 지원 (청소년, 부모)
・부모교육, 자조모임, 학습지원(온라인), 마음돌봄 프로그램, 가족캠프 운영 등
[수행기관]
・수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31-236-1317)</td></tr><tr><td>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서비스</td><td>[대 상]
・관내 9세~24세 위기청소년
[주요사업]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 활동지원
※ 다른 제도 및 법(기초생활보장)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 불가
[수행기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td></tr><tr><td>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사업</td><td>[대 상]
・저소득 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노동청소년
[주요사업]
・중등 1,000천원, 고등 1,500천원(연2회 /4월, 9월 각 50%씩 지급)
[수행기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td></tr></table></td><td>• 해당 시설 등</td></tr>
</table>

<table>
<tr><th>세 부 사 업</th><th>문 의</th></tr>
<tr><td>

• **지원사업**

<table>
<tr><th>구 분</th><th>지원대상 및 내용</th></tr>
<tr><td>여성 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 서비스</td><td>[대 상]
・만 9세 ~ 24세 법정저소득 여성청소년
[주요사업]
・위생용품 구입 바우처 지원(월 14천원/1인, 반기별 지원)
[수행기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td></tr>
<tr><td>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td><td>[대 상]
・관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주요사업]
・생활지원, 학습지원, 역량강화활동, 특별지원, 주말체험 등
[시설현황]
<table>
<tr><th>시 설 명</th><th>소 재 지</th><th>전화번호</th><th>비고</th></tr>
<tr><td>수원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td><td>팔달구 권광로 283 (수원청소년문화센터)</td><td>218-0405</td><td>초, 중등반</td></tr>
<tr><td>칠보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td><td>권선구 서수원로 77번길 209 (칠보청소년청년센터)</td><td>278-6341</td><td>초등반</td></tr>
</table></td></tr>
</table>

</td><td>• 해당 시설 등</td></tr>
</table>

□ 청소년 시설 운영

<table>
<tr><th>세 부 사 업</th><th>문 의</th></tr>
<tr><td>

• 지원사업

<table>
<tr><th>구 분</th><th>지원대상 및 내용</th></tr>
<tr><td>청청마음
건강센터
운영</td><td>[대 상]
・관내 청소년 및 청년(9 ~ 39세)
[주요사업]
・전문심리상담(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교육 및 수퍼비전 등
[시설현황]
・광교청소년청년센터 3층 광교상담실
영통구 도청로17번길 24(이의동) / ☏ 216-0757</td></tr>
<tr><td>이주배경
청소년
전문상담실
“담소”
운영</td><td>[대 상]
・한국사회 부적응 및 가족 내 정서적 어려움으로 상담이 필요한 이주배경 청소년
・심리 관련 맞춤형 상담을 필요로 하는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 설계 및 대학 진학을 원하는 이주배경 청소년
[주요사업]
・청소년 욕구에 따른 1:1 맞춤형 심리·진로 진단 및 상담
・심리진단 및 진로 계획에 따른 전문상담사 연계
・상담 구조화 및 계획 수립·평가
・대학 진학 지원(이력서 첨삭 및 모의 면접 지원)
[시설현황]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팔달구 팔달로 141번길 4 (화서동) / ☏ 247-1324</td></tr>
<tr><td>청소년
회복지원
시설 지원
운영</td><td>[대 상]
・소년법 처분(제1호)을 받은 보호 청소년
[주요사업]
・보호 청소년들에게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지원
・관련 부처(여성가족부, 법원, 법무부 등)의 청소년 복자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시설현황]
<table>
<tr><th>시 설 명</th><th>소 재 지</th><th>전화번호</th><th>비고</th></tr>
<tr><td>세나여자청소년
회복지원시설</td><td>장안구 경수대로 1071
(파장동, 이일빌딩 2~3층)</td><td>268-7073</td><td></td></tr>
<tr><td>세나남자청소년
회복지원시설</td><td>장안구 파장천로 44번길 87,
104동 103호(파장동, 현대아파트)</td><td>268-7073</td><td></td></tr>
</table></td></tr>
<tr><td>청소년
쉼터 운영</td><td>[대 상]
・가정 밖 위기청소년
[주요사업]
・생활지원 : 의식주 지원, 의료지원, 법적지원 등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응 교육, 자치위원회 운영 등
[시설현황]
<table>
<tr><th>시 설 명</th><th>소 재 지</th><th>전화번호</th><th>비고</th></tr>
<tr><td>수원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 달보듬터)</td><td>권선구 경수대로 261
(세류동) 리치타워 3층</td><td>216-8353</td><td></td></tr>
<tr><td>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 별보듬터)</td><td>팔달구 행궁로 77
(팔달로3가) 송산빌딩 3층</td><td>232-7982</td><td></td></tr>
</table></td></tr>
</table>

</td><td>• 해당 시설</td></tr>
</table>

이주민과 상생하는 포용도시, 수원

□ 이주민 시설 운영

<table>
<tr><th>세 부 사 업</th><th>문 의</th></tr>
<tr><td>

• 지원사업

<table>
<tr><th>구 분</th><th>지원대상 및 내용</th></tr>
<tr><td>글로벌
청소년
드림센터</td><td>[대 상]
・이주배경 청소년 (9세~24세)

[주요사업]
・초기상담 및 생활상담, 맞춤형 서비스지원, 수준별 한국어 교육, 다문화 예비학교, 다문화위탁교육기관, 방과후학습지원, 전문상담실, 동아리 활동, 문화여가활동지원, 지역사회연계 문화체험, 진로한국어, 리더십아카데미, 진로체험, 자립훈련지원, 검정고시 학력취득지원, 지역조직화사업, 자원관리 등

[시설현황]
・팔달구 팔달로 141번길 4 (화서동) / ☏ 247-1324</td></tr>
<tr><td>다문화
가족지원
센터</td><td>[대 상]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

[주요사업]
・가족사업 및 상담, 성평등 및 인권, 사회통합, 홍보 및 외부자원연계, 교류 소통공간 운영, 방문교육,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통·번역서비스,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및 직업훈련,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지원, 서포터즈사업, 동아리모임, 가족캠프지원 등

[시설현황]
・장안구 송원로 63 (송죽동, 신성빌딩 3층) / ☏ 257-8504</td></tr>
<tr><td>외국인
복지센터</td><td>[대 상]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

[주요사업]
・다문화 한가족축제, 세계문화체험, 재수원교민회, 상담사업, 한국어 교육사업,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통역지원사업, 사회통합프로그램, 무료진료 및 이미용 지원사업, 홍보사업 등

[시설현황]
・팔달구 중부대로 43, 7~8층(지동, 실로암메디컬빌딩) / ☏ 223-0075</td></tr>
</table>

</td><td>• 해당 시설</td></tr>
</table>

□ 다문화가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table>
<tr><th>세 부 사 업</th><th>문 의</th></tr>
<tr><td>• 지원사업
<table>
<tr><th>구 분</th><th>지원대상 및 내용</th></tr>
<tr><td>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td><td>[대 상]
・결혼이민자
[주요사업]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운영 및 국내 적응프로그램 운영 등
[수행기관]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td></tr>
<tr><td>결혼
이민자
직업훈련</td><td>[대 상]
・한국어교육 이수자 중 결혼이민자
[주요사업]
・취업교육
- 취업 기초 소양교육 :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및 직장내 대화기법, 직장인의 자세, 이미지메이킹 등
- 전문 자격 취득과정 : 전문가 양성과정, 자격증 취득과정 등
・일자리 연계 : 교육생 구직표 작성 및 일자리 정보망 등록, 취업연계
・사후관리
[수행기관]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td></tr>
<tr><td>다문화
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td><td>[대 상]
・다문화자녀(4~11세) 및 초등학교 재학 중도입국자녀
[주요사업]
・한글, 국어, 독서 학습교육 중 1과목 선택
・주 1회 방문하여 교재 및 교육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교원 구몬학습</td></tr>
<tr><td>다문화
가족
신문구독
지원</td><td>[대 상]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 관련 유관기관 등
[주요사업]
・매월 2회(1일, 16일) 다문화 신문 보급
[수행기관]
・경기다문화뉴스, 한국다문화뉴스</td></tr>
<tr><td>다문화
가족
동아리 모임
지원</td><td>[대 상]
・다문화가족 최소 7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모임 5개
[주요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교육, 임산부 및 육아 돌봄, 다문화자녀 교육 활동
・요리, 체육, 문화체험 활동, 자원봉사, 다문화 인식개선 활동 등</td></tr>
</table></td><td>• 해당 시설</td></tr>
</table>

□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지원

<table>
<tr><th>세 부 사 업</th><th>문 의</th></tr>
<tr><td>

• **지원사업**

<table>
<tr><th>구 분</th><th>지원대상 및 내용</th></tr>
<tr><td>외국인
긴급지원
사업</td><td>

[대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소득·재산 기준(2025년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기준 준용)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5년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지원내용]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했을 경우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지원
- 생계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5년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0	2,485,400

- 의료비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0천원)
·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최대 500천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0천원)
- 장제비 : 1인당 최대 1,000천원

[수행기관]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td></tr>
<tr><td>외국인
생활안전
교육
(온라인)</td><td>

[대 상]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등

[주요사업] 생활법률, 교통안전, 환경보호, 아동학대, 다문화인식개선(5개분야)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 시 구제방안, 스토커 예방, 교통안전 대응,
아동학대 신고(4개 언어), 쓰레기 분리수거·배출 안내 등 영상 제공

[수행기관]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td></tr>
<tr><td>외국인
생활안내서
(전자책)</td><td>

[대 상]
・수원시 거주 외국인주민 등
(제작언어 : 한국어 기반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주요사업]
・수원시 현황 및 생활쓰레기 처리, 생활법규 등 일상생활 안내
・유용한 전화번호, 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 기관, 단체 및 사업 안내 등

[수행기관]
・외국인주민 유관기관 등

</td></tr>
</table>

</td><td>• 해당 시설</td></tr>
</table>

세 부 사 업	문 의
• **지원사업** **구 분** / **지원대상 및 내용**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말하기 대회** **[대 상]**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일반시민 등 **[지원내용]** ・의식행사, 경연대회, 문화공연, 시상 - (외국인주민) 한국어 말하기 대회 - (다문화자녀)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다문화 한가족축제** **[대 상]** ・외국인주민 및 수원시민 **[주요사업]** ・세계인의 날 기념식 (유공자 표창, 기념사, 축사) ・다문화특별 퍼포먼스, 상설 행사 (외국인지원코너 운영 등) ・한국전통의상 및 세계민속의상패션쇼, 세계음식・문화 체험 ・특집공개방송 (외국인 민속공연, 퓨전공연, 초대가수 등) **[수행기관]**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 해당 시설

보건소 모자보건 및 건강증진사업

□ 건강증진사업

<table>
<tr><th>세 부 사 업</th><th>문 의</th></tr>
<tr><td>

• 지원사업

<table>
<tr><th>구 분</th><th>지원대상 및 내용</th></tr>
<tr><td>진 료</td><td>

[대 상]
・15세 이상의 시민

[진료실 운영]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내과질환 – 고혈압, 당뇨, 감기 등
・한방진료
- 요통, 좌골신경통, 근육통, 오십견 등 진맥, 침, 투약, 기본 한방진료
・물리치료
- 예약제 운영으로 사전 예약 필수

[진 료 비]
・일반 : 검사 및 진료 내용에 따라 비용 부담
・무료 : 의료급여 수급자, 1~3급 장애인, 65세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와 유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 피해자 등
※ 무료 대상자 증명서류 필요

</td></tr>
<tr><td>생애
전환기
건강검진</td><td>

[대 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검진내용]
・진찰 및 상담 , 신체계측 검사, 시력·청력 검사
・골밀도 검사 →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검사 → 66세 이상(2년 주기)
・정신건강(우울증) 검사 → 70세
・생활습관 평가 →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 66세, 70세, 80세

</td></tr>
</table>

</td><td>• 관할 시군구 보건소</td></tr>
</table>

<table>
<tr><th>세 부 사 업</th><th>문 의</th></tr>
<tr><td>

• **지원사업**

구 분	지원대상 및 내용
아동 담당의 의료지원 (권선구 보건소)	**[대 상]** ・만6세~12세이하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선정기준]** ・구강, 시력, 비염, 척추 및 근골격, 정신, 비만에 해당하거나, 질환에 이환 될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아동 ・보호자, 학교장, 지정 의료기관장, 지역아동센터, 수원시 드림스타트 등 추천 ・수원시 아동의료지원 운영위원회 심의·등록된 아동 **[지원내용]** **・지정 의료기관에 현금 지급** - 등록비 지원 : 1년 / 4회 이상 지정 의료기관 방문 시 7만원 정액 지원 - 치료비 지원 : 아동 담당의 추천 및 치료 심의 대상 아동 30만원 한도 지원 ※ 비급여 검사, 치료, 수술, 보장구, 약제비 등 **[지정 의료기관]** ・81개소(지정 안경업소 18개소) / 수원특례시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영양 플러스 사업	**[대 상]** ・거주기준 : 수원시 해당구 거주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3인가구의 경우 4,021,000원) 이하 ※ 3인의 경우 직장가입자 143,298원, 지역가입자 75,675원 ・대상기준 : 영유아(65개월미만),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건강기준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유아비만 중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지원내용]** ・영양 문제 해소 및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 ・영양 교육 및 상담(월 1회), 정기적 영양상태 평가 ・영양 보충식품 지원(월 2회)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산모수첩 등

</td><td>• 관할 시군구 보건소</td></tr>
</table>

□ 모자보건사업

<table>
<tr><th>세 부 사 업</th><th>문 의</th></tr>
<tr><td>

•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table>
<tr><th>구 분</th><th>지원대상 및 내용</th></tr>
<tr><td>혼인전 / 임신전 건강검진 사업</td><td>[대 상]
•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지원내용]
• 검사내용 : 흉부 X-ray, 일반혈액(CBC,신장기능, 간기능, 공복혈당), 소변 당/단백/PH/잠혈, B형간염 항원·항체, 성병(에이즈,매독)
• 소요시간: 30분
• 준 비 물
- 예비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신혼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검사비용 : 무료
• 유의사항
- 검사 당일 4시간 이상 금식
- 검사 결과 7일 후 확인 가능
- 방문 수령 또는 인터넷 출력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 민원서비스
⇒ 검진/검사결과 조회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통한 본인확인
⇒ 건강검진내역]</td></tr>
<tr><td>엽산제 지원</td><td>[대 상]
• 임신을 준비 중인 관내 거주 여성
[지원내용]
• 엽산제 최대 3개월분 지원(수령 후 1년 이내 추가지원 불가)
※ 1인당 1개월분 기준 임신 전·후 최대 3개월분임
[구비서류]
• 신분증</td></tr>
<tr><td>임신 사전건강 관리 지원사업</td><td>[대 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지원내용]
•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25. 1월~ 확대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지원항목: 필수검사항목을 포함한 가임력 검사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 정밀형태검사 포함)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검사비 청구서, 외래진료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td></tr>
</table>

</td><td>• 관할 시군구 보건소</td></tr>
</table>

세 부 사 업	문 의
• 지원사업	• 관할 시군구 보건소

구 분	지원대상 및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 상]** **· 관내 거주 모든 난임부부** - 매 회차 신청 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 조사 실시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및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로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비뇨기과 제외)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과는 관계가 없음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방법(난임자 본인 직접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필요) **· 지원금액** 구 분 / 지원금액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체외수정(1~20회)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50만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동결배아 구분 없이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시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진단서(정부지원 난임시술기관 발급),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사실혼관계자의 경우 1년이상 사실혼 관계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등 **[참고자료]** **· 난임시술 지정기관 안내** - 건강in 홈페이지 / 검진기관/병원 찾기 / 병(의)원 정보 /병(의원) 찾기 / 특성별 병원 선택 / 난임시술 지정기관 검색 **·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안내** 구 분 / 운영기관 / 주 소 / 대표전화 경기도 권역 /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4번길 11, 3층 / 031-255-3375

<table>
<tr><th colspan="2">세 부 사 업</th><th>문 의</th></tr>
<tr><td colspan="2">• 지원사업</td><td rowspan="3">• 관할 시군구 보건소</td></tr>
<tr><th>구 분</th><th>지원대상 및 내용</th></tr>
<tr><td>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td><td>[대 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항목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 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지원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하지 않으면, 시술횟수 차감 없음)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td></tr>
<tr><td>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td><td>[대 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원시 거주 난임가구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 자격자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개인 사정으로 시술 중단한 경우 지원 불가)된 경우
*의학적 사유: 공난포, 난소 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 불량, 기타 의학적 판단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 시술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절차에 따라 지원

[지원내용]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회당), 횟수 제한 없음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착상 보조제(최대 20만원)
- 약제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 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 약 처방을 받은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 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 사본(병원에서 제공), 청구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약제비 상세 내역서(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청구서 다운로드 가능)
• 청구기한: 시술 완료(중단)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td></tr>
</table>

<table>
<tr><th>세 부 사 업</th><th>문 의</th></tr>
<tr><td colspan="2">•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td></tr>
<tr><td>
<table>
<tr><th>구 분</th><th>지원대상 및 내용</th></tr>
<tr><td>산전관리
/ 임산부
등록관리</td><td>
[사업기간]
• 연중(평일)
[사업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외국인은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F-6 등))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
[준 비 물]
•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재한외국인(F-6 등) 추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여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업내용]
• 임신 시기별 건강관리
<table>
<tr><th>시 기</th><th>내 용</th></tr>
<tr><td>임신 반응 검사</td><td>• 무료(생리예정일 2주 후, 월 1회)</td></tr>
<tr><td>임신 11주
6일까지</td><td>• 임산부 초기검사
- 혈액검사 : 일반혈액, B형간염 항원·항체, 에이즈/매독
- 소변검사 : 요당, 요단백, 요잠혈, PH
• 엽산제 지원(개월 수에 따라 최대 3개월분 지원)
※ 해당 일자 지나서 오는 경우 소급지원 불가</td></tr>
<tr><td>임신 20주~
분만 시</td><td>• 철분제 지원(개월 수에 따라 최대 5개월분 지원)
* 필요 시 16주부터 지원 가능
※ 해당 일자 지나서 오는 경우 소급지원 불가</td></tr>
<tr><td>임산부
우울선별검사</td><td>•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신청 : 해당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접수
• 내용 : 임산부 우울 선별 검사 및 상담, 우울 고위험 임산부 전문 인력 연계
※ 산전과 산후 각각 검사 가능</td></tr>
<tr><td>임산부
건강교실</td><td>• 운영 : 상반기(4월~6월), 하반기(9~11월)
* 비대면 운영
• 신청 : 새빛톡톡,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접수
• 프로그램 : 출산교실, 부부교실</td></tr>
</table>
</td></tr>
<tr><td>임신 초기
/말기 검사</td><td>
[운영기간]
• 평일 09:00~11:30 / 13:00~17:30
※ 운영시간 외 검사 불가
[사업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초기 : 임신 11주 6일까지 임산부(CBC, 신장기능, 혈당검사,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간기능 , AIDS/매독, 소변 당/단백/PH/잠혈)
• 말기 : 임신 34주 이후 임산부(CBC, 신장기능 , 혈당검사, 간기능, 소변 당/단백/PH/잠혈)
[준 비 물]
•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검 사 비]
• 무료
[유의사항]
• 검사 당일 4시간 이상 금식
• 검사 결과 7일 후 확인 가능
• 방문 수령 또는 인터넷 출력(공동인증서 필요)
•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 민원서비스 ⇒ 검진/검사결과 조회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통한 본인확인 ⇒ 모성검사]
</td></tr>
</table>
</td><td>• 관할 시군구 보건소</td></tr>
</table>

<table>
<tr><th>세 부 사 업</th><th>문 의</th></tr>
<tr><td>

•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

<table>
<tr><th>구 분</th><th>지원대상 및 내용</th></tr>
<tr><td>산후관리/
유축기
대여사업</td><td>

[대 상]
・주민등록 주소지가 수원시 거주자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함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지원내용]
・대여기간 : 1개월(30일)
・신청방법 : 관할구 보건소 방문 또는 fax신청(대리신청 가능, 증빙서류 첨부 (예)가족관계증명서)
[구비서류]
・신청서 홈페이지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의 경우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신고 전 - 출생증명서 제출

</td></tr>
<tr><td>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td><td>

[대 상]
・신청일 기준 임산부 ※본인신청만 가능, 대리신청 불가, 외국인 임산부 등록불가
[지원내용]
・임신지원에 대한 제공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한 번에 통합신청
・통합신청 가능한 임신지원 서비스 : 총 12종(현물서비스 택배지원)

<table>
<tr><th>제공서비스</th><th>신청가능 시점</th><th>처리기관</th></tr>
<tr><td>엽산제 지원</td><td>-임신 3개월까지 신청 가능
-임신주수에 따라 최대 3개월분 지급</td><td rowspan="7">보건소</td></tr>
<tr><td>철분제 지원</td><td>-임신 초기~
-임신주수에 따라 최대 5개월분 지급
※ 엽산제 및 철분제 일괄 제공 가능
※ 다태아(쌍둥이) 출산자의 경우 고함량 철분제 수령을 원할 시 직접 수령만 가능(택배 발송 불가, 보건소 문의 필수)</td></tr>
<tr><td>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td><td>-출산 예정일 40일 전~</td></tr>
<tr><td>표준모자보건수첩</td><td>-임신 초기~</td></tr>
<tr><td>임신축하용품</td><td>-임신 초기~</td></tr>
<tr><td>임산부 주차증</td><td>-임신 초기~
※ 사용기간: 신청일 ~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 후까지</td></tr>
<tr><td>맘편한 ktx</td><td>-임신 초기~</td><td>한국철도공사</td></tr>
<tr><td>SRT 임산부 할인</td><td>-임신 초기~</td><td>에스알</td></tr>
<tr><td>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td><td>-임신 초기~</td><td>국민건강
보험공단</td></tr>
<tr><td>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td><td>-임신 초기~</td><td rowspan="2">시·군·구
(읍·면·동
포함)</td></tr>
<tr><td>에너지바우처</td><td>-별도 고지된 신청기간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참고</td></tr>
<tr><td>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td><td>-임신 초기~</td><td>사회보장
정보원</td></tr>
</table>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온라인 : 정부24 접속 후 공동인증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방 문 : 임신확인서, 신분증 등

</td></tr>
</table>

</td><td>

• 관할
시군구
보건소

</td></tr>
</table>

<table>
<tr><th>세 부 사 업</th><th>문 의</th></tr>
<tr><td>

• **모성지원사업**

<table>
<tr><th>구 분</th><th>지원대상 및 내용</th></tr>
<tr><td>고위험
임산부
지원</td><td>

[대 상]
・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절박유산, 자궁경부무력증, 분만전 출혈,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으로 인한 입원 치료비 받는 자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단, 영주권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 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은 지원가능) 및 국외 이주자

[지원내용]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비 지원(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90%)
・최대 300만원 지원

[구비서류]
・신청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 사본 등

</td></tr>
<tr><td>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td><td>

[대 상]
・관내 거주 임산부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대 상</th><th>비고</th></tr>
<tr><td rowspan="2">국가 지원</td><td>전환형</td><td>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td><td></td></tr>
<tr><td>추가형</td><td>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td><td></td></tr>
</table>

[지원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유효
・지원기간

<table>
<tr><th rowspan="2">태아 유형</th><th rowspan="2">출산 순위 및 제공인력 수</th><th colspan="3">서비스기간</th></tr>
<tr><th>단축형</th><th>표준형</th><th>연장형</th></tr>
<tr><td rowspan="3">단태아</td><td>첫째아</td><td>5일</td><td>10일</td><td>15일</td></tr>
<tr><td>둘째아</td><td>10일</td><td>15일</td><td>20일</td></tr>
<tr><td>셋째아 이상</td><td>10일</td><td>15일</td><td>20일</td></tr>
<tr><td rowspan="2">쌍태아
(중증장애산모+단태아)</td><td>인력 1명</td><td>10일</td><td>15일</td><td>20일</td></tr>
<tr><td>인력 2명</td><td>10일</td><td>15일</td><td>20일</td></tr>
<tr><td rowspan="2">삼태아
(중증장애산모+쌍태아이상)</td><td>인력 2명</td><td>15일</td><td>25일</td><td>40일</td></tr>
<tr><td>인력 3명</td><td>15일</td><td>25일</td><td>40일</td></tr>
<tr><td rowspan="2">사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삼태아이상)</td><td>인력 2명</td><td>15일</td><td>25일</td><td>40일</td></tr>
<tr><td>인력 4명</td><td>15일</td><td>25일</td><td>40일</td></tr>
</table>

[지원절차]

<table>
<tr><th>신청 및 접수</th><th></th><th>대상자 확인</th><th></th><th>시스템 입력</th><th></th><th>통 지</th></tr>
<tr><td>신청서, 소득확인 서류 등 제출</td><td>⇨</td><td>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확인</td><td>⇨</td><td>접수 즉시 확인내역 '행복e음'에 입력</td><td>⇨</td><td>대상자 선정결과를 결정 · 통지</td></tr>
<tr><td>신청자</td><td></td><td>보건소</td><td></td><td>보건소</td><td></td><td>보건소
사회복지
통합관리망</td></tr>
</table>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산모 또는 배우자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및 납부확인서, 산모수첩, 주민등록등본, 자격확인 서류(수급자 증명서 등)

</td></tr>
</table>

</td><td>• 관할 시군구 보건소</td></tr>
</table>

<table>
<tr><th>세 부 사 업</th><th>문 의</th></tr>
<tr><td>

• **모성지원사업**

<table>
<tr><th>구 분</th><th>지원대상 및 내용</th></tr>
<tr><td>산후
조리비
지원</td><td>

[대 상] 소득수준 및 거주기간 무관

・부 또는 모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수원시에 출생 등록하고, 출산일(포함) 12개월 이내 신청
-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의 경우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이고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산모가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수원페이 카드) 지원
※ 다태아 :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쌍둥이 100만원 등)

[지원절차]

<table>
<tr><th>신청자</th><th>행정복지센터</th><th>보건소</th><th>경기지역화폐</th></tr>
<tr><td>・출생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경기민원24)</td><td>・접수 및 자격 확인
・발급대상자 등록
・신청 공문</td><td>・지원 대상 승인
・예산 집행 및 관리
・실적관리 및 홍보
・예탁금 관리</td><td>・지역화폐카드 발송
・지역화폐 관리 포탈 운영</td></tr>
</table>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생증명서) 등

</td></tr>
<tr><td>임산부
우울
선별검사</td><td>

[대 상]

・보건소 등록 산모

[지원내용]

・내소 시 우울선별 검사 및 상담
・10점 이상의 고위험군 산모에게 수원시 성인정신보건센터, 경기도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연계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등

</td></tr>
</table>

</td><td>

• 관할 시군구 보건소

</td></tr>
</table>

<table>
<tr><th>세 부 사 업</th><th>문 의</th></tr>
<tr><td colspan="2">• 영유아 지원사업</td></tr>
<tr><td>
<table>
<tr><th>구 분</th><th>지원대상 및 내용</th></tr>
<tr><td>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td><td>
[대 상]
• 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이내 Q코드 진단받고,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치료목적이 아닌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100만원 이하 : 전액 지원
• (미숙아) 체중에 따른 차등 지원한도 300~1,000만원
• (선천성이상아) 500만원
[구비서류]
• 신청서, 미숙아 출생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통장사본 등
</td></tr>
<tr><td>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지원</td><td>
[검사지원]
• 지원대상
- 선별검사비 지원(최대 2회)
· 출생 후 28일 이내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대사이상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 지원(진료비 제외)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했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확진검사비 지원(7만원 한도)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확진검사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지원
•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 준 비 물
- 영수증, 검사비 상세(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보건소 방문 작성),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환아지원]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환아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인 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아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환아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인 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은 경우, 보건소에 환아 등록(최초 신청)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 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신청
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한도 지원
<table>
<tr><th>구 분</th><th>질 환 명</th><th>지원내용</th></tr>
<tr><td rowspan="2">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td><td>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닌알라닌혈증(반은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 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오르니틴대사장애,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td><td>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td></tr>
<tr><td>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td><td>의료비</td></tr>
<tr><td>희귀등기타질환</td><td>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td><td>특수조제분유</td></tr>
</table>
• 환아 관리방법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지원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페닐케톤뇨증, 크론병 등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질환 환아지원)
· 신청기간 : 총 4회(분기별 1~10일) ※ 단, 신규 환아는 예외 적용 가능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 준 비 물
- 진단서, 영수증, 소견서 또는 진단서, 진료확인서, 주민등록사본, 통장 사본 등
</td></tr>
</table>
</td><td>• 관할 시군구 보건소</td></tr>
</table>

<table>
<tr><th>세 부 사 업</th><th>문 의</th></tr>
<tr><td>

• **영유아 지원사업**

<table>
<tr><th>구 분</th><th>지원대상 및 내용</th></tr>
<tr><td>신생아 난청 보청기 지원</td><td>
[검 사 비]
· 지원대상
- 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 출생일 기준 1년이내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e보건소 공공보건 포털, 아이마중앱 등)
· 지원내용
- 선별 검사비용 지원(최대 2회)
· 출생 후 28일 이내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검사 시 청각선별검사(AOAE, AABR)의 본인부담금 지원(진료비, 전액 본인부담금 제외)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했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확진 검사비용 지원(7만원 한도)
· 검사결과 관계없이 확진검사(단, ABR 또는 ASSR 반드시 포함)의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금 제외) 지원
· 구비서류
-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및 검사비 세부내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 구비서류
- 확인서 발급 시(처방전, 검사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등본)
- 결정서 발급 시(구입 내역서, 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설명 사진 2장, 검수확인서, 등본, 통장사본)
</td></tr>
<tr><td>저소득층 기저귀 지원</td><td>
[대 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출산가정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80%(3인가구의 경우 4,021,000원)이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월정액 9만원 지원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신청 자격(수급자 등)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td></tr>
<tr><td>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td><td>
[대 상]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 불가능한 경우
[지원내용]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월정액 11만원 지원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신청 자격(수급자 등)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산모 사망 또는 질병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
</td></tr>
</table>

</td><td>• 관할 시군구 보건소</td></tr>
</table>

세 부 사 업	문 의
• **영유아 지원사업** **구 분** / **지원대상 및 내용**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접종 및 검사지원** **[지원대상]**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2011. 1. 1. 이후 출생자) 중 산모의 임신 중 산전검사 결과지 제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자 **[검사방법]** ・효소면역검사법(EIA), 화학발광 미세입자 면역측정법(CIA, CLA, CLIA), 전기화학발광 면역측정법(ECL) 등의 정량검사법 ※ 권장되는 이외의 방법으로 검사 시 검사료 지급 불가 **[지원내용]** ・기본지원 : 면역글로불린 1회, B형간염 기초 3회 예방접종, 항원 · 항체검사 ・추가지원 : 항원 · 항체검사에 따라 재접종 및 재검사 실시 **[지원절차]** ① 분만기관에서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 산모 대상 사업설명 및 검사결과지 제공 ② 위탁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작성 및 접종/검사 ③ 위탁의료기관은 대상자 승인신청(산모검사결과지 업로드) 및 접종/검사 결과등록(비용상환 신청) ④ 보건소에서 대상자 승인 및 비용상환 심사/지급	• 관할 시군구 보건소

<table>
<tr><th>세 부 사 업</th><th>문 의</th></tr>
<tr><td>

•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table>
<tr><th>구 분</th><th>지원대상 및 내용</th></tr>
<tr><td>영유아
건강검진</td><td>

[대 상]

・14일 ~ 71개월 영·유아

[검진시기]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검진주기</th><th></th></tr>
<tr><th>일반</th><th>구강</th></tr>
<tr><td>1차</td><td>생후 14~35일</td><td>-</td></tr>
<tr><td>2차</td><td>생후 4~6개월</td><td>-</td></tr>
<tr><td>3차</td><td>생후 9~12개월</td><td>-</td></tr>
<tr><td>4차</td><td>생후 18~24개월</td><td>생후 18~29개월</td></tr>
<tr><td>5차</td><td>생후 30~36개월</td><td>생후 30~41개월</td></tr>
<tr><td>6차</td><td>생후 42~48개월</td><td>생후 42~53개월</td></tr>
<tr><td>7차</td><td>생후 54~60개월</td><td>생후 54~65개월</td></tr>
<tr><td>8차</td><td>생후 66~71개월</td><td>-</td></tr>
</table>

[검진기관] 수원시보건소에서 건강검진 시행하지 않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에서 검색 가능

[검진비용]

・무료

・장애 및 장애가 의심되는 자녀가 있을 경우, 지역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후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지원

- 경기특수교육지원센터 : 031-820-0776
- 수원특수교육지원센터 : 070-4486-9164, 070-4486-9740

</td></tr>
<tr><td>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td><td>

[대 상]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통보된 대상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최대 20만원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만 지원

[지원방법]

・지정 검사기관 이용 시: 거주지 보건소에서 지원대상자 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 검사 진행
・본인이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 시: 검사기관에 검사비를 먼저 납부한 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보건소에 비용 청구

[신청기간]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구비서류]

・신청 시, 영유아 건강검진 검사 결과지, 신청 자격(수급자 등) 증명서
・청구 시, 진료비 영수증 원본(세부내역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검사항목, 의무기록 사본 또는 진단서), 통장 사본

[검진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에서 검색 가능

</td></tr>
</table>

</td><td>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1577-1000)

</td></tr>
</table>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table>
<tr><th>세 부 사 업</th><th>문 의</th></tr>
<tr><td>

• **지원사업**

구 분	지원대상 및 내용
성인 암환자 (건강보험 가입자)	**[대 상]** ・**국가 5대 암(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 폐암** - **'21.6.30 이전 국가암검진 수검 후** 수검일 기준 **만 2년이내 5대암 진단**받고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하는 자** - **'21.6.30 이전 폐암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하는 자** ※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2025.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127,500원, 지역 57,000원 이하 **[지원내용]** ・암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실비 지원 **최대 200만원**(비급여 지원 불가) /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등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 가입자) ※ 당연 선정대상	**[대 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18세 이상의 원발성 암환자**(악성신생물, 제자리암종 등) ※ 원발성암 – 전이된 암이 아닌 처음 발생한 암 ※ 원발성 암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전이암 지원 가능 **[지원내용]** ・암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실비 지원 **최대 300만원**(비급여 지원 불가) /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등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 상]** ・**18세 미만 암환자(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18세 미만 중 소득·재산기준 이하인 환아** **(소득기준)** **2025년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자 **소득기준(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적용)** (단위 : 원) **1인 : 2,870,416** / **2인 : 4,719,190** / **3인 : 6,060,424** **4인 : 7,317,328** / **5인 : 8,529,830** / **6인 : 9,677,766** **2025년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자 **재산기준** (단위 : 원) **1인 : 365,834,906** / **2인 : 410,170,014** / **3인 : 441,614,475** **4인 : 472,475,482** / **5인 : 501,552,288** / **6인 : 529,080,719** **[지원내용]** ・백혈병 및 조혈모세포이식 **최대 3,000만원** ・위 사항을 제외한 암 **최대 2,000만원** **[유의사항]** ・진단서(상병명, 질병코드, 최초 진단 연월일, 최종 진단 필수 기재) ・보건소 방문 신청 전 유선 문의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등

</td><td>• 관할 시군구 보건소</td></tr>
</table>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기준	문 의

[대 상]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으로 진단받고 해당 질환으로 산정특례에 등록된 **소득·재산조사 기준**에 적합한 **건강보험가입자**

(소득기준)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25년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환자가구	희귀질환 (140%)	3,348,818	5,505,721	7,035,494	8,536,882	9,951,469
	4대질환 (160%)	3,827,221	6,292,253	8,040,565	9,756,437	11,373,107
부양의무자 가구	희귀질환 (200%)	4,784,026	7,865,316	10,050,706	12,195,546	14,216,384
	4대질환 (240%)	5,740,831	9,438,379	12,060,847	14,634,655	17,059,661

(재산기준)

※ **질병관리청 발행「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참조**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으로 진단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단, 간병비, 특수식 구입비만 가능)

[지원내용]

지원항목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의료비(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대상질환 진료비 - 만성신장병 요양비 - 보조기기 구입비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소득·재산 조사 기준에 적합한 자	미지원
간병비(월 30만원) ※ 근육병 등 97개 질환자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에 충족하는 자	지원	지원
특수식 구입비 - 특수조제 분유(연간360만원이내) / 28개질환 - 저단백 즉석밥(연간168만원이내) / 28개질환 - 옥수수 전분(연간 168만원이내) / 9개질환 ※ 당원병 환자를 위한 혈당관리	소득·재산 조사 기준에 적합한 19세 이상인자 지원	19세 이상만 지원

※ 지원 항목에 따라 대상질환 및 추가 구비서류 상이

[구비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신청자(환자)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문 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table>
<tr><th>세 부 사 업</th><th>문 의</th></tr>
<tr><td>

• **지원사업**

<table>
<tr><th>구 분</th><th>지원대상 및 내용</th></tr>
<tr><td>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td><td>[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 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 독거노인 및 75세이상 노인부부가구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등
-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 환자 등
[지원내용]
• 보건의료 전문인력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만성질환자 및 합병증 예방관리, 건강형태 개선
• 생애주기별 건강문제 관리
• 재가암 대상자 의료비지원 및 연계서비스 제공
• 대상자 요구에 맞는 보건·복지 연계서비스 제공</td></tr>
<tr><td>어르신
방문건강
관리</td><td>[대 상]
• 65세이상 어르신
- 집중대상 : 만65세, 70세, 75세 도래어르신, 90세 이상 장수어르신,
65세이상 건강고위험 어르신 및 빈곤위기가정
[지원내용]
• 어르신 건강포괄평가 및 맞춤형 연계서비스
• 건강포괄평가 후 집중관리, 정기관리, 자기역량지원으로 분류하여 정기적 관리
• 건강위험도에 따른 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독거 특화사업 운영, 경로당 건강증진사업
• 계절별 건강관리교육(한파, 미세먼지, 폭염), 감염병 예방 등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등급자(1~5등급) 제외</td></tr>
</table>

</td><td>• 관할
시군구
보건소</td></tr>
</table>

□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table>
<tr><th>세 부 사 업</th><th>문 의</th></tr>
<tr><td>

• 지원사업

<table>
<tr><th>구 분</th><th>지원대상 및 내용</th></tr>
<tr><td>수원시
행복정신
건강복지
센터</td><td>[대 상]
• 전 연령

[주요사업]
•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 마로앱 운영
• 재난심리지원 및 회복탄력역성 프로그램 운영
• 기관 종사자 대상 찾아가는 마음산책(검진교육 프로그램)
•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홍보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교육
• 마음건강관리사업[마음건강상담실, 톡톡열린상담실(정신과전문의)]
※ 모든 내소상담 사전예약 필수

[시설현황]
• 장안구 송원로 101번길 장안구청 1층(조원동) / ☏ 253-5737</td></tr>
<tr><td>수원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복지센터</td><td>[대 상]
• 0세~18세

[지원내용]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맞춤형 질환 관리, 상담, 사례관리
• 집단프로그램 운영
• 가족코칭 및 가족성장 지원 사업
• 마음건강 학교 만들기 사업
• 홍보 및 교육사업

[시설현황]
• 팔달구 동말로 47번길 17, 1~2층(화서동) / ☏ 242-5737</td></tr>
<tr><td>수원시
성인
정신건강
복지센터</td><td>[대 상]
• 19세~64세

[지원내용]
• 만성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 연합체육대회, 회원 예술제 등 개최
• 시민 정신건강 강좌 개최 등

[시설현황]
• 팔달구 매산로 89 (매산로3가) / ☏ 247-0888</td></tr>
<tr><td>수원시
노인
정신건강
복지센터</td><td>[대 상]
• 65세 이상

[지원내용]
• 노인 정신질환(우울증, 수면장애 등)에 대한 상담 및 등록 관리
• 맞춤형 통합 프로그램 운영
• 조기 발견을 위한 노인정신건강 종합검진
• 노인 자살예방사업
• 교육 및 홍보 등

[시설현황]
• 영통구 영통로 396(영통동) 영통구보건소 / ☏ 273-7511</td></tr>
</table>

</td><td>• 해당 시설</td></tr>
</table>

□ 보건소 자살예방 및 중독관리센터 운영

<table>
<tr><th>세 부 사 업</th><th>문 의</th></tr>
<tr><td>

• 지원사업

<table>
<tr><th>구 분</th><th>지원대상 및 내용</th></tr>
<tr><td>수원시
자살예방
센터</td><td>

[대 상]
· 전 연령

[주요사업]
· 상담사업(전화, 내소, 게시판, 실시간)
· 자살예방교육(학생, 학부모, 교사, 군인 등)
· 생명사랑 인식개선 및 생명존중문화 운동
·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 자살위기상담(전화, 내소, 방문)
· 유가족지원(상담, 교육, 자조모임, 심리부검)
· 자살예방교육(의무화 대상 및 관심군)
· 생명사랑안심마을 사업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보호자 동의 필수
모든 상담은 본인 동의 후 가능
초기상담은 센터로 내소하여 대면상담으로 진행

[시설현황]
· 팔달구 동말로 47번길 17, 3층(화서동) / ☏ 247-3279

</td></tr>
<tr><td>수원시
중독관리
통합지원
센터</td><td>

[대 상]
· 전 연령

[지원내용]
·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개입 사업
· 알코올 및 기타 중독의 예방 및 관리사업, 가족 지원사업
· 중독폐해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자원 개발사업 등

[시설현황]
· 팔달구 매산로 89 (매산로3가) / ☏ 256-9478

</td></tr>
</table>

</td><td>• 해당 시설</td></tr>
</table>